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차 연구토론회

# 동유라시아의 향신료와 약재

- 일시: 2023년 9월 23일(토) 13: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201호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차 연구토론회

# 동유라시아의 향신료와 약재

- 일시: 2023년 9월 23일(토) 13: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201호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 제1차 연구토론회 일정\_2023년 9월 23일(토)

### - 주제: 동유라시아의 향신료와 약재 -

개회식	
13:00~13:10	인사말   노대환(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장 겸 HK+사업단장)
1부 발표	
13:10~13:35	사회   이승호(동국대) 【제1발표】 조선시대 용뇌(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발표   권기석(동국대)
13:35~14:00	【제2발표】 17세기 조일 인삼무역과 대마번(對馬藩)의 인삼 담론 발표   이해진(동국대)
14:00~14:25	【제3발표】 청대 호남선 빈랑(檳榔) 증독과 원인 고찰 발표   김현선(동국대)
14:25~14:35	휴식
2부 발표	
14:35~15:00	사회   이승호(동국대) 【제4발표】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발표   남민구(동국대)
15:00~15:25	【제5발표】 동유라시아 용연향의 생산과 유통 발표   이완석(동국대)
15:25~15:50	【제6발표】 조선시대 교(膠)의 수급과 소비 발표   김병모(동국대)
15:50~16:00	휴식
16:00~17:30	【종합토론】 좌장   정철웅(명지대) 토론: 이형주(국민대), 임경준(동국대), 김장구(동국대), 최소영(동국대), 장혜진(가톨릭관동대)



## 목 차

【제1발표】 권기석(동국대) 조선시대 용뇌(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	11
【제2발표】 이해진(동국대) 17세기 조일 인삼무역과 대마번(對馬藩)의 인삼 담론 .....	45
【제3발표】 김현선(동국대) 청대 호남선 빈랑(檳榔) 증독과 원인 고찰 .....	59
【제4발표】 남민구(동국대)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	63
【제5발표】 이완석(동국대) 동유라시아 용연향의 생산과 유통 .....	75
【제6발표】 김병모(동국대) 조선시대 교(膠)의 수급과 소비 .....	93



【제1발표】

## 조선시대 용뇌(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권기석(동국대)

---

머리말

I. 조선시대 용뇌의 수입과 유통

II. 조선에서 사용된 용뇌의 종류와 특징

III. 용뇌의 효능과 활용

맺음말



2023.09.23. HK+사업단 연구토론회

## 조선시대 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권기석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 목차

- 머리말
- I. 조선시대 용뇌의 수입과 유통
- II. 조선에서 사용된 용뇌의 종류와 특징
- III. 용뇌의 효능과 활용
- 맺음말

## 머리말

대체 불가능한 국제무역품, 龍腦  
용뇌란 무엇인가  
용뇌와 장뇌에 대한 연구성과  
용뇌라는 물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용뇌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

## 대체 불가능한 국제교역품, 龍腦

- 전근대 장거리 국제교역의 필요성: 특수한 효능과 수요가 있는 약재는 지리적 거리와 운송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먼 지역에서 들여올 필요성이 발생함
- 龍腦: 열대 지역에서 생산되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였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사례 중 하나

## 용뇌란 무엇인가

-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龍腦樹에서 채취하는 향료이자 약재
- 특징과 효능: 청량감을 가져다 주는 독특한 향기, 답답하게 막힌 것을 풀어줌
- 유사 물품 '樟腦': 녹나무(중국·일본 남부에서 산출)에서 채취, 추출을 위해서는 증류 등의 부가적인 공정이 필요
- 한국에서는 장뇌의 원료인 녹나무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

## 용뇌와 장뇌에 대한 연구성과

- 醫書에서 언급된 龍腦와 의학적 활용
- 香料로서의 활용
- 대외무역을 통해 거래된 용뇌: 동남아시아 해상 실크로드
- 용뇌의 생산(제조법)과 유통, '장뇌'와의 구별
  
- 한국사를 중심으로 용뇌를 고찰한 연구는 부족

## 용뇌라는 물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1.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소비되어온 물품
- 2.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향기와 효능이 있으며, 다양한 가공품의 재료가 되어 활용도가 높아짐
- 3. 생산지는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요 지역은 광범위하여 장거리 국제교역이 필요했음
- 4.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량이 부족하여 대체품이나 저급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음

## 용뇌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

- 전체 주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용뇌의 국제적 유통과 의학적 활용의 확대
- 1. 조선시대 용뇌의 수입과 유통
- 2. 조선에서 통용된 '龍腦' 또는 '樟腦'
- 3. 용뇌의 효능과 소비 확대

## I. 조선시대 용뇌의 수입과 유통

용뇌의 수입: 고려 이전  
용뇌의 수입: 동남아시아 사절과의 직교역  
용뇌의 수입: 중국 明朝  
용뇌의 수입: 중국 淸朝  
용뇌의 수입: 일본  
용뇌의 국내 유통: '臘劑'와 唐藥材 납부  
臘藥을 통한 용뇌의 배분

### 용뇌의 수입: 고려 이전

- 752년(경덕왕 11)에 신라왕자 김태렴(金泰廉) 이하 7백여 명의 대 사절단이 일본에 내방하여 교역활동을 하였는데, 이때의 교역품 중 하나가 용뇌향
- 1226년(고종 13)에 편찬된 고려시기의 의서 『御醫撮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약재 10가지 중 하나에 龍腦 포함
-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龍腦가 宋을 통해서 고려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됨

## 용뇌의 수입: 동남아시아 사절과의 직교역

- 1406년(태종 6) 南藩 爪哇國 사신 陳彥祥이 전라도 群山島에서 왜구에게 약탈을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배 속에 실은 약재 중에서 용뇌가 포함됨

## 용뇌의 수입: 중국 明朝

- 明과의 정례화된 使行을 통해 龍腦를 지속적으로 수입
  - 중국의 용뇌도 자국산이 아닌 남방 열대에서 산출된 것
- 희귀 약재였던 용뇌, 교역품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선물
  - 면포와 교환을 시도하는 조선: 1403년(태종 3) 조선은 明에 李貴齡을 파견하여 조공하면서 父王(태종)의 병을 위해서 용뇌, 침향, 소합, 향유 등의 약재가 필요하니 布를 가지고 조공하겠다고 주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태의 원에 명하여 내려주고 布는 돌려주도록 함
  - 선물 대 선물: 1406년(태종 6)에는 조선에서 銅佛을 바치자, 명에서는 그 답례로 '片腦' 등 약재 18종을 보내줌
  - 칙서에 동봉된 선물: 1425년(세종 7)에 進賀使가 '欽賜藥材勅書'와 함께 용뇌 1근을 받아들음

## 용뇌의 수입: 중국 明朝

- 희귀 약재였던 용뇌, 교역품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선물
  - 칙사가 가지고 온 선물: 1320년(세종 32)에는 명의 사신 倪謙이 용뇌 등 여러 약재를 올림
  - 조선의 권력자에 대한 배려(외교상의 우대 또는 진품을 얻기 위한 수단): 1475년(성종 6) 좌의정 한명회가 명에 다녀오면서 太監 姜玉이 주는 용뇌를 가지고 왔음. 강육은 1481년(성종 12) 조선 사신이 머무르는 會同館에 이르러 蘇合油와 龍腦 1근씩을 특별히 주었는데, 모두 '御封印題'를 한 것으로 황제가 내탕으로 특별히 내려준 것이었으며, 한명회가 본국에서 진짜를 얻지 못하여 부탁한 것임

## 용뇌의 수입: 중국 明朝

- 明末 사행을 통한 용뇌 확보의 어려움
  - 광해군~인조대 明의 사신 일행으로부터 용뇌를 사들였는데, 御用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1622년, 광해군 14), 1냥의 값이 많게는 17냥에 이르는 가격을 깎으려 시도했으며(1625년, 인조 3), 명 사신이 발매한 용뇌가 御用에 부적합하여 8냥만을 취하기도 함
  - 인조 초년 명과의 陸路가 막혀서 海路를 통해 무역해서 들여와야 하니 호조에서는 비축 분량 확보의 필요성 주장(1625년, 인조 3)
  - 1625년(인조 4) 張禮忠이 행차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보따리에 넣은 구리, 호박, 용뇌, 주사 등의 물건 약간을 교역하기를 청함 → 수요가 많지 않아 시전상인이 아닌 호조에서 바꿔 주도록 조치함
  - 1626년(인조 4)까지는 호조에 비축된 용뇌가 포함된 약재의 물량이 있어서 사오지 않았으나, 1629년(인조 7) 내의원이 보유한 용뇌가 바닥나서 약용 또는 납제에 쓸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楸島의 물화를 보내도록 함

## 용뇌의 수입: 중국 明朝

- 광해군~인조대 용뇌 수입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 조선전기 이래로 주로 명과의 사행 무역으로 용뇌 등 약재 수입
  - 수입된 약재는 주로 호조에서 구입하였으나, 시장상인도 일부 구입하였음
  - 명청 교체로 인해서 해로로만 약재를 수입하였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호조에서 구입한 용뇌 등 약재는 내의원에서 사용했으며 ‘臘劑’도 중요한 용도 중 하나였음

## 용뇌의 수입: 중국 清朝

- ‘年例貿易唐材’ 속의 용뇌: 『승정원일기』에서 관례적으로 언급
  - 年例로 무역하는 唐材(용뇌 포함)가 內醫院에서 필요로 하는 1년 所用과 臘劑에 필요한 것에 비하여 부족
  - 다음 사행 전에 갖추어야 함
  - 용뇌 값을 戶曹에 지급하고 무역하도록 함

## 용뇌의 수입: 중국 清朝

### • 唐藥材 무역의 특징

- 100년 이상 장기 지속된 무역 (사료상: 1661년, 현종 2~1753년 영조 29) → 『승정원일기』에 ‘年例貿易唐材’로 지칭되며, 별도의 표로 정리 중 (작업 용부표 A)
- 용뇌 이외에 여러 당약재가 언급됨: 黃連, 琥珀, 無孔珠, 朱砂, 石雄黃, 眞珠, 鹿茸, 麝香, 肉桂, 使君子, 犀角, 蘇合油 등
- 비용은 戶曹에서, 사용은 內醫院에서(국왕과 왕실가족, 臘藥을 위해)
- 결제 수단은 銀 (平安監司와 義州府尹이 마련한 管餉銀子 사용)
- 御醫가 사행에 동행하여 직접 선별: 眞僞 판별을 위해서

## 용뇌의 수입: 중국 清朝

- 용뇌 등 약재 수입으로 인한 銀의 지출 (영조 4, 1728)
  - 호조의 1년 은화 수입은 2,000냥 이내, 지출은 7,311냥 (내국의 당약재 값이 7,930냥2전7푼, 그 중 용뇌는 95냥)
  - 4~5년 전 14만 냥이었던 은 보유량이 6만 여 냥으로 감소
- 용뇌 등 약재의 別贖와 銀價 문제에 대한 논의 (영조 48년, 1772)
  - 호조에서 別贖하거나 평안감영에 명하여 무역하도록 함
  - 연례적으로 호조가 唐材 銀價(2,529냥, 이 중 용뇌는 95냥, 최대 3,140냥에 달함)를 내놓음. 내의원은 매번 다 쓰고 나면 貿易契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여 폐해가 큼
  - 내의원은 연례적인 은가를 내세우며 공인에게 責罰을 가하면서 加贖하는 폐단이 있어서 이를 시행하지 않도록 함
  - → 貢人이 용뇌의 납품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 용뇌의 수입: 중국 清朝

- 戶曹에서 당약재 공납을 관리: 『唐藥材契變通節目』(1856년, 奎 19337)
  - 唐藥材契: 御用 唐藥材를 상납하는 貢人契로서 호조에 속함
  - 唐藥材契人들은 호조에서 銀價를 받아서 赴燕使行을 통해 당약재를 구입함
  - 북경에서 당약재의 가격 상승과 受價와 時價와의 차이로 인한 폐단에 대해서 언급하였음

## 용뇌의 수입: 중국 清朝

- 용뇌의 사적인 수입
  - 1799년(정조 23) 燕行 기록에 따르면, 白礪店이라는 곳을 지날 때 同樂寺라는 절에서 역관과 하인이 용뇌 성분이 들어간 眼疾藥을 많이 구입함. 이 곳에서 매매하는 안질약은 거의 고려(조선) 사람에게 판매되었는데, 義州 商賈가 그 이익을 독차지한 결과였다고 함

## 용뇌의 수입: 일본

- 이미 8세기 신라와의 교역 물품 중에 용뇌가 포함되어 있었음
- 조선초기 일본 사절의 龍腦 獻上

시기	사절	물품
1421년(세종 3) 4월 16일 戊申	對馬島 左衛門代郎	龍腦 4兩
1423년(세종 5) 1월 12일 甲午	筑州管事 平滿景	龍腦 50錢目
1423년(세종 5) 10월 4일 辛亥	對馬州太守 宗貞盛	용뇌 1斤4兩重
1423년(세종 5) 11월 24일 辛丑	源道鎮	龍腦 3兩重
1427년(세종 9) 1월 13일 壬寅	一岐州의 知州 源朝臣重	龍腦 5兩重
1427년(세종 9) 1월 13일 壬寅	肥前州의 源臣昌明	龍腦 3兩重

## 용뇌의 수입: 일본

- 조선초기 일본 사절의 樟腦 獻上

시기	사절	물품
1421년(세종 3) 11월 6일 乙丑	九州總管 源道鎮	樟腦 5근
1423년(세종 5) 9월 18일 丙申	筑州府 石城管事 平滿景	樟腦 5근
1423년(세종 5) 10월 15일 壬戌	九州 多多良德雄, 築前州 管事 平滿景	各 장뇌 10근 및 5근
1423년(세종 5) 10월 25일 壬申	平滿景	장뇌 1근
1423년(세종 5) 11월 17일 甲午	平滿景	장뇌 10근
1424년(세종 6) 6월 16일 己未	石城管事 平滿景	장뇌 4근
1424년(세종 6) 11월 23일 甲午	石城管事 平滿景	장뇌 20근
1426년(세종 8) 11월 1일 庚寅	石城管事 宗金	장뇌 5근
1426년(세종 8) 12월 14일 癸酉	九州 前都元帥 源道鎮	장뇌 5근

## 용뇌의 수입: 일본

- 용뇌보다 장뇌의 현상 빈도가 더 잦고, 물량도 더 많아 보임
- 동일인의 현상에 '용뇌'와 '장뇌'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같은 물품의 異稱이라기보다는 구분되는 별개의 물품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 용뇌의 수입: 일본

- 세종대 이후 정례적인 교역품으로 용뇌 거래
  - 1494년(성종 25) 왜인이 가지고 온 물건 중 용뇌 등은 國用에 긴요하니 값을 물어서 무역하도록 허용. 값을 더 주고서라도 무역하도록 지시
  - 1525년(중종 20) 일본 사신이 가져온 용뇌 28근 중 1/3만 공무역 대상으로 하고자 하자, 전부 무역하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함. 공무역에서 수입량을 제한하려는 조선과 가져온 것을 모두 교역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 측의 마찰은 이외에도 더 확인됨
  - 1522년(중종 17) 내섬시의 종이 왜인의 房守로서 興利를 하던 사람과 공모하여 **황금, 용뇌 등 물품으로 속여서 진상**
  - 1544년(중종 39) 일본 사절의 일행으로 온 왜인들이 무역하는 상품에 대하여 정가를 고쳐달라고 함
  - 1545년(중종 40) 일본 사신이 용뇌, 호초, 단목, 침향 등을 무역하려 함

## 용뇌의 수입: 일본

- 17세기 전반 일본 용뇌 수입과 한계
  - 1618년(광해군 10) 왜인과 무역하는 용뇌의 품질이 양호하니 값을 지급하여 사오도록 조치함. 또한 예전에는 용뇌 등 약재를 왜인이 진상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 東來府使가 수시로 바치도록 함
  - 1629년(인조 7) 일본의 副差 平智光이 鐵砲, 鳥銃, 硫黃 등과 함께 용뇌를 진상함 → 1639년(인조 17) 당약재가 부족하자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倭差가 가져오는 약재를 올려 보내라고 함
  - 1639년 무렵 동래부사가 왜관에서 은을 주고 사서 올려보낸 용뇌 등 약재가 도착했는데 **품질이 나쁜 것이 섞여 있었음**
  - 같은 해 12월 내의원에서 용뇌를 부산에서 사오는 것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臘劑 중에 **용뇌가 들어간 약재의 맛이 다르다**는 왕의 하교가 있어서 내의원 관원이 두려워함

## 용뇌의 수입: 일본

- 17세기 전반 중국으로부터의 용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에 의존
- 품질에 대한 의문 제기
  - 상대적으로 저급품이 들어왔을 가능성
  - 조선에서 소비되던 기존 '용뇌'와 차별화되는 일본산 '장뇌'가 들어왔을 가능성
- 조선후기 실록, 『승정원일기』 등 공식 국가기록에 일본산 용뇌 또는 장뇌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음
  - 같은 시기 일본에서 자국산 樟木를 증류하는 樟腦 제조법이 개발되어 장뇌 생산이 활성화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현상임

## 용뇌의 국내 유통: '臘劑'와 唐藥材 납부

- 臘劑: 선달 그믐날 신하에게 의례적으로 나누어 준 상비약인 '臘藥'을 조제하는 것을 의미함
  - 납약에는 '용뇌'가 중요 재료 중 하나로 들어감
- 납약에 들어갈 당약재 물량 확보를 위해서 '納者'로 지칭되는 민간의 공납업자를 활용
  - 1629년(인조 7) 진상할 납제에 들어갈 당약재(용뇌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納者 韓彥協과 洪慶俊을 독촉, 일족의 우두머리를 가두기도 함
  - 1632년(인조 10) 내의원은 약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醫員 金永吉과 課官 崔元立, 洪慶俊 등을 囚禁하고 독촉 → '赴京藥材'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호조로 하여금 두 배 값으로 다시 징수하게 하는 것이 규례였음 → 이번에도 값을 징수하여 바꾸어 사게 할 것을 제안함

## 용뇌의 국내 유통: '臘劑'와 唐藥材 납부

- 1633년(인조 11)에도 납자 李時燦, 裴堯立, 金彥深, 姜廷元 등이 용뇌 등의 약재를 봉납하지 않아서 수금하고 독촉 → 납약 조제 기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용뇌는 중국에서 사오는 수량 자체가 많지 않았음 → 강정원이 사와야 할 5냥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데, 강정원은 값을 마련하여 납부하고 싶지만 옥중에 있어서 주선할 수 없다고 호소함
- 1637년(인조 15)에는 용뇌를 찾아서 들여온 하인을 내의원에서 論賞하도록 함. 같은 해 吳以建이 용뇌 등 당재 6종을 바치자 전라감영의 審藥 자리에 전례에 따라 差送하도록 함
- 1653년(효종 4) 납약을 짓는데 용뇌가 부족하자 당재를 무역하고서 미납한 자에게 징수하자고 제안

## 용뇌의 국내 유통: '臘劑'와 唐藥材 납부

### • 臘劑와 貢物主人

- 1724년(영조 즉위) 용뇌 미납 사건: 내의원의 납약에 들어가는 용뇌는 보통 호조에서 進排함. 사행 때 상거래가 허용된 역관에게 그 값에 해당하는 은을 내준 다음 구매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이 常例였음. 전년도 冬至使行 때 역관 金益海가 값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 龍腦를 구매하여 그의 집에 두었고, 호조의 看品까지 받았으나 실제 납입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음 → 이로 인해 내의원의 용뇌가 떨어져 兩醫司의 貢物主人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약재 가게의 용뇌가 떨어져 賁人들은 3배의 가격으로도 구매하지 못함
- 『萬機要覽』에 따르면 戶曹 공물에 대한 別賣貢價가 정리되어 있는데, 1778년(정조 2) 各廳契 別賣 내용 중에 '唐藥材契'의 折錢이 2,091냥으로 기재되어 있음 → 상인들의 조직인 契에서 정례적으로 당약재를 공물로 납품

## 용뇌의 국내 유통: '臘劑'와 唐藥材 납부

### • 납제를 위한 당약재 납부에 관한 추론

- 당약재를 납품하는 책무를 가진 부류(납자)의 존재
- 납자가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族人에게까지 책임 전가, 완납할 때까지 수감되거나 원가보다 비싼 금액 징수
- 정기적인 사행을 통해서 약재를 사들였으나(역관 등이 값을 받아 사행에 다녀온 후 납품), 납약 조제 기일이 촉박할 경우 국내 약재 시장에서 구입했던 것으로 생각됨
- 市廳의 唐藥材契에서 정례적으로 당약재 납품

## 臘藥을 통한 용뇌의 배분

- 내의원은 납약에 필요한 용뇌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 → 용뇌가 포함된 약재를 신료들이 복용할 수 있게 됨
- 15~16세기에도 신료에게 희귀 약재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으며 용뇌도 이에 해당함
  - 1525년(중종 20) 창병을 앓고 있던 대사간 蔡忱에게 兩醫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급함. 성종대 應行條件에 따르면 재상이나 朝士가 병이 나면 사가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약을 병증에 따라 적절히 지급하도록 한 것을 따름
  - 1655년(효종 6) 衙譯 尹墜이 瘡疾을 심하게 앓자 양의사에서 용뇌 등이 들어간 환약을 지어 주도록 함

## 臘藥을 통한 용뇌의 배분

- 신료에게 용뇌가 들어간 납약을 나누어주는 관행은 조선전기부터 있었음: 許筠(1569~1618)의 문집에 용뇌가 납제에 사용되었다고 언급됨
- 조선후기 『승정원일기』에 납약 마련을 위해 필요한 당약재(용뇌 포함)의 부족량에 대해 내의원에서 관례적으로 보고하고 호조에서 조치함
  - → 납약을 위한 당약재 무역량 확보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표로 정리중: [작업용 부표 B]
  - 용뇌가 포함된 기사는 1662년~1779년에 걸쳐 확인됨
  - 용뇌 등 납약 재료 부족량을 보고하고, 호조가 전례에 따라 부족분을 무역해서 보냄
  - 대비전, 세자궁 등 납약을 供上할 대상을 명기하기도 함
  - 1743년(영조 19) 이후로는 호조 이외에 선혜청도 부족분을 마련함

## 臘藥을 통한 용뇌의 배분

- 납약이 실제로 신료에게 분배된 사례
  - 李德懋는 1783년(정조 7) 4월 2일 沙斤 임소에서 청심원 2알, 안신원 2알, 소합원 5알, 구미청심환 2알, 용뇌고 3알 등 5종의 납약을 받음
  - 李德懋는 1786년(정조 10) 1월 23일에도 積城 임소에서 下去單子를 올리고 安神元 2알, 龍腦膏 1알, 抱龍元 3알 등 3종의 납약을 받음
  - 李安訥(1571~1637)의 『東岳先生集』에는 납약으로 龍腦, 麝香, 蘇合清心元 등을 받은 기록이 보임

## II. 조선에서 사용된 용뇌의 종류와 특징

용뇌와 장뇌의 비교

중국에서 들어오는 용뇌의 원산지

朝鮮産 '용뇌'의 존재

조선에서 구별한 龍腦와 樟腦

용뇌의 眞僞에 대한 논란

## 용뇌의 장뇌의 비교

- 용뇌의 명칭
  - 梵語로는 Kampura라고 하는데, 용뇌 주산지인 수마트라 남부 해안 지역의 명칭에서 유래함 → 중국에서 음역하여羯布羅라로 부름
  - 龍腦: 귀중하다는 의미의 '龍'자를 붙임
  - 氷片腦: 무색투명한 결정 형태로 반짝이는 얼음과 같다는 의미
  - 梅花腦: 매화 꽃잎 같다고 하여 부르는 명칭
  - 기타: 梅片, 腦子, 羯婆羅香, 米腦, 速腦, 金脚腦, 蒼龍腦
- 상기한 명칭은 주로 용뇌를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장뇌를 지칭할 때도 용뇌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됨

## 용뇌와 장뇌의 비교

- 원료 식물과 제조법
  - 용뇌: 龍腦樹(Dryobalanops aromatics Gaertner)의 樹幹에서 흘러나오는 樹脂를 굳혀서 얼음 (장뇌처럼 樹幹과 樹枝를 썰어서 수증기를 증류하여 얻기도 함)
  - 장뇌: 녹나무(Cinnamomum camphora)의 목질부, 가지, 잎을 절단하여 수증기를 증류하여 얻은 樟腦油를 냉각시켜 결정체를 析出시킴
- 원산지
  - 용뇌: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섬 등 열대 동남아시아
  - 장뇌: 중국, 일본 남부 등 아열대 지역



2 本草品彙精要卷17 樟腦



1 本草品彙精要卷17 樟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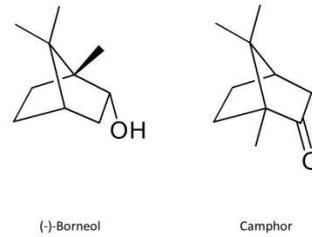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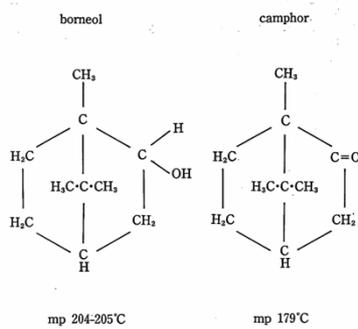
▲『本草品彙精要』(중국明代 1505년)에 나오는 장뇌의昇華精製

출처: 宮下三郎, 「竜腦と樟腦、天工から人工へ」,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22, 198

## 용뇌와 장뇌의 비교

### • 약효 성분

- 용뇌: borneol(보르네올, 보르네오 장뇌)
- 장뇌: camphor(캠퍼)



### ▲ Borneol & campho의 화학적 구조 차이

- 출처: 宮下三郎, 앞 논문 등

## 용뇌와 장뇌의 비교

- 용뇌보다 장뇌의 제조에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원료 식물의 분포는 더 넓었던 것으로 생각됨
  - 현대에는 장뇌에 몇 가지 공정을 거치면 용뇌를 만들 수 있게 됨
  - 현재 유통 중인 용뇌의 대부분은 장뇌(소뇌)이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 합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중국에서 들어오는 용뇌의 원산지

### • 暹羅

- 『心田稿』(1828, 朴思浩): 섬라의 공물로 ‘氷片’과 ‘樟腦’가 있다고 언급. 용뇌/장뇌를 상호 구별
- 『日省錄』(純祖代): 섬라국의 공물로 樟腦兒, 氷片, 氷片油 등이 있다고 언급. 여기서도 용뇌/장뇌를 구별
- 조선왕조실록: 1785년(정조 9) 섬라국이 청조에 올린 표문을 소개하면서, 황제에게 氷片과 樟腦를 바쳤다고 함. 1798년(정조 22)에도 섬라 사신이 청에 方物로 中氷片과 樟腦를 바쳤다고 기록
- 용뇌와 장뇌를 확실히 구별하였음. ‘빙편’ 또는 ‘중빙편’은 용뇌의 별칭으로 생각되며, 장뇌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양을 바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희귀한 약재였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에서 들어오는 용뇌의 원산지

### • 南天竺

- 『靑莊館全書』, [蜻蛉國志]: 氷片은 南天竺 안의 작은 나라인 太泥의 토산물이며, 중국인이 무역하여 일본까지 이른다고 함

### • 渤泥島

- 『北轅錄』(李義鳳의 여행록, 1760~1761): 적도 아래의 渤泥島(보르네오섬)에서 片腦가 나는데 불을 붙여 불속에 넣어도 타오른다고 함

### • 交趾

- 『東國李相國集』: 唐代 交趾國에서 瑞龍腦를 진상했다고 함
- 『芝峯集』: 1579년(선조 30) 연경에 사신으로 간 李晬光이 安南國 사신에게 ‘龍香’이 생산된다는 시구를 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중에 『楊貴妃傳』을 읽고, ‘교지에서 瑞龍腦香을 진상했는데, 늙은 龍腦樹 마디라야 있게 된다’는 문구를 접했다고 밝힘

- 이상과 같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용뇌의 원산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섬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뇌’의 생산지로 인식하지는 않음

## 朝鮮産 ‘용뇌’의 존재

- 1653년(효종 4) 용뇌가 부족하자 제주도의 龍腦를 이송하여 和劑하는 데 쓰자는 제안이 있었음
  - 한국 남부는 樟樹는 있을 수 있지만 龍腦樹는 없음

## 조선에서 구별한 龍腦와 樟腦

- 조선의 사료에 보이는 용뇌의 유사품 또는 대용품, 小腦:
  - “정부의各司와 市井의 무리들이 쉽게 蘇合元과 保命丹 등을 제조하면서 용뇌를 얻지 못하면, 小腦를 사용하여 약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藥性을 잃게 되고 本方에 어긋나 유해하다.” (『세종실록』 1440년, 세종 22, 11월 22일)
  - 현대 한의학 서적의 설명: 小腦는 녹나무의 목부 가지 잎을 잘라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은 樟腦油를 생각시켜 얻은 결정체인 ‘樟腦’를 의미함.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용뇌수에서 산출되는 ‘龍腦’와는 구별됨
  - 조선 성종대 저술 『慵齋叢話』에도 ‘朱砂(황화 수은)와 雄黃(황화 비소)이 비슷한 것처럼, 消腦와 龍腦가 비슷하다’고 함. 消腦는 小腦의 다른 명칭으로 생각됨
  - 東萊府接倭狀啓膽錄可考事目錄抄冊 (奎貴 9764, 禮曹 編): 丁卯(1627년)
    - 八月有 旨書狀內沈香沈束 龍腦小腦 肉桂桂皮等物求請於倭館

## 조선에서 구별한 龍腦와 樟腦

- 19세기 조선 類書『五洲衍文長箋散稿』:
  - ‘龍腦’로 알려진 물품 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많아서 구별이 어려움. ‘서양 선박에서 온 것’을 진짜 용뇌로 믿을 수 있으며, 이를 ‘氷片’이라 부른다고 함
  - 昭腦 또는 小腦라고 불리는 약재가 바로 樟腦라고 하였는데, 『本草』를 인용하며 녹나무[樟木]를 절편하고 升腦 및 鍊腦를 하여 成片하는 제조법을 설명
- 『度支準折』(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5127-3):
  - 조선후기 여러 물품의 종류와 규격을 정리함. 小腦와 龍腦가 함께 기록됨
  - 용뇌 1근의 값은 은 100냥, 소뇌 1근의 값은 1냥이라서 두 약재의 가치에 100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옥책문 제책에 용뇌 및 소뇌를 사용: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1759)의 [品目秩]
  - 玉冊文의 粧冊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배접감 楮注紙 3장, 麝香 3푼, 龍腦 3푼, 小腦 1돈, 胡椒 1홉, 砒霜 9푼, 黃蜜 3돈, 白礬 5푼’이 있었음

## 용뇌의 眞僞에 대한 논란

- 명 황제의 배려로 특별히 진품을 받아옴: 1481년(성종 12) 한명회가 명에 본국에서 蘇合油와 龍腦의 진품을 얻지 못한다고 부탁하여 황제가 내탕으로 내려준 것을 특별히 받아옴
- ‘腦子’라고 불린 약재의 정체: 16세기 저술 『稗官雜記』에는 ‘腦子’라고 불리던 약재를 당시 의원들이 이를 龍腦로 알고 있으나, 1533년(중종 28) 燕京에서 太醫 江宇에게 물어 뇌자를 보여달라고 하니 실은 붉은 빛이 나는 비상이었다는 일화를 소개
- 중종대(1522년), 인조대(1639년) 가짜 및 저급 용뇌 사건 (앞에서 제시)
- 인조대에도 명의 사신단이 발매한 용뇌를 看品하여 적합한 경우에 만 御用에 쓰도록 조치

## 용뇌의 眞僞에 대한 논란

- 조선후기에도 진품을 구하기 어려운 약재로 알려져 무역 시에 御醫가 동행하도록 함: 1720년(경종 즉위) “黃連, 朱砂, 石雄黃, 眞珠, 龍腦 등은 모두 요긴한 약재이고 진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사행에 御醫가 들어갈 때 餉銀子 2~300냥을 管運하여 별도로 입송시켜 정밀히 택하여 사오도록” 조치함
- 향이 약한 내의원의 용뇌: 1736년(영조 12) 李光佐는 용뇌를 종이 위에 두면 잠깐 사이에 향이 퍼지는 데 비하여, 당시 內局의 용뇌는 향이 끝내 퍼지지 않으니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함. 좌부승지 尹容도 仰竹 통에 용뇌를 두어 향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하여 용뇌가 매우 향이 강한 약재임을 강조함
- 19세기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당시의 白龍腦라는 것은 壁土薄荷를 쓰는 까닭에 土氣가 많아서 냄새가 眞腦와는 다르다고 했고, 이를 거짓으로 片腦(龍腦)에 충당한다고 함

## 용뇌의 眞僞에 대한 논란

- 저급 용뇌의 수입처(주로 일본): 앞서 제시한 여러 사례를 볼 때 일본산(또는 일본 경유) 용뇌는 중국산(또는 중국 경유) 용뇌와 품질이나 香味 등에서 차별화되었던 생각되며, ‘저급 용뇌’의 상당량은 일본산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 용뇌는 유사한 용도이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는 장뇌와 함께 유통되고 있었고, 전자는 氷片, 片腦 등으로, 후자는 小腦, 昭腦 등으로 불렸음. 조선 왕실과 정부에서는 전자의 용뇌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용뇌의 진위가 논란이 되었음

### III. 용뇌의 효능과 활용

용뇌의 일반적 성질과 약효

특권층이 사용하는 귀중한 약재, 하지만 광범위한 효능: 고려 이전

특권층이 사용하는 귀중한 약재, 하지만 광범위한 효능: 內醫院의 용뇌 사용과 처방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민간의 용뇌 사용과 대중화

### 용뇌의 일반적 성질과 약효

- 용뇌의 성질: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이 서늘함. 막힌 것을 통하게 해 주고, 정신을 맑게 하며, 열과 浮氣를 내리고 통증을 완화시켜 줌
- 용뇌의 약효: 고열, 경련, 소아 경기, 구내염, 눈병, 가려움증, 충혈, 귀와 코의 염증 등에 처방
- 장뇌의 약효(용뇌와 유사): 吐瀉, 腹痛에 사용되며(막힌 것을 통하게 함), 종기, 피부궤양, 악창, 옴, 버짐, 가려움증에 외용하고(염증에 사용), 강심, 진통 효과가 있다(통증을 완화)

## 특권층이 사용하는 귀중한 약재, 하지만 광범위한 효능: 고려 이전

- 고려시대 지배층의 용뇌 사용
  - 1079년 宋에서 風痺證에 걸린 文宗을 위해 용뇌 등 약재를 보내줌
  - 무신집권자 崔瑀가 12~13세기 문신 李奎報의 눈병을 위해 의원과 용뇌를 보냄
  - → 처방한 증상: 풍비증, 눈병

## 특권층이 사용하는 귀중한 약재, 하지만 광범위한 효능: 內醫院의 용뇌 사용과 처방

- 『승정원일기』 등으로 통해 조선후기 왕실 인물의 ‘용뇌’ 포함 약재 처방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 왕실 가족의 용뇌 처방 사례는 별도의 표로 정리 중: 작업용 부표 E
- 왕실 가족의 용뇌 처방 사례
  - 宣祖: 靈神丸, 龍腦蘇合元 처방. 다만 용뇌가 기운을 분산시키며 서늘한 느낌이 든다고 하며 꺼림
  - 仁祖: 龍腦安神丸 처방. 발열, 눈이 흐릿해짐, 가슴 두근거림, 머리 어지럼증,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었음
  - 莊烈王后(仁祖妃): 龍腦安神丸 1646(인조 24)~1688년(숙종 14)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처방. 기가 편치 않고 막힌 증후가 반복. 만년에는 원기가 빠져나가며 가래가 심함

## 특권층이 사용하는 귀중한 약재, 하지만 광범위한 효능: 內醫院의 용뇌 사용과 처방

### • 왕실 가족의 용뇌 처방 사례

- 明聖王后(顯宗妃): 淸金強火丹, 龍腦安神丸 가슴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움. 목구멍에 마른 가래. 막혀서 오그라드는 증세. 원기가 허함. 가슴, 옆구리, 배의 통증. 변비. 열이 나는 증세
- 景宗: 龍腦安神丸. 원자일 때 가래로 인해 가슴이 답답함
- 仁顯王后(肅宗妃): 治腫으로 유명한 洪瑞龜가 처방한 고약을 사용. 옆구리와 아랫배 근처의 종기와 통증
- 肅宗: 龍腦安神丸을 재위 40년(1714)부터 46년(1720) 사망시까지 장기간 복용. 주요 증상은 熏熱, 惡寒, 困惱, 膈氣, 惡心, 飽滿之氣, 口淡. 痰飲, 咳嗽, 喘症, 무릎, 허리, 등골 등이 당기면서 아픈 증세. 종기가 끓어 고름이 나옴, 다리와 발 부분의 浮氣, 가려움증(搔癢), 목구멍이 마르고 다리가 저림, 呼吸不平, 溺道不平, 喉乾, 眩氣, 눈이 침침함 등

## 특권층이 사용하는 귀중한 약재, 하지만 광범위한 효능: 內醫院의 용뇌 사용과 처방

### • 왕실 가족의 용뇌 처방 사례

- 仁元王后: 龍腦安神丸 처방. 감기, 눈이 건조하고 눈꺼풀이 부어오름, 腫患, 濕痰 등의 증상으로 숙종 44년(1718)부터 간간이 복용함
- 英祖: 龍腦安神丸 처방. 현기증, 疝氣, 滯氣, 감기, 膈痰, 心火, 현기증, 기침, 땀이 나는 증상, 목이 아픔, 감기, 목소리가 무겁고 탁하며 콧물이 나옴, 팔이 당기고 아픔, 가래, 가슴이 답답함, 風丹, 斑疹, 땀이 지나치게 많음. 왕세제였던 1723년(경종 3)부터 복용 확인
- 貞聖王后(英祖妃): 龍腦安神丸 처방. 가슴이 답답한 증후
- 思悼世子(莊祖): 龍腦安神丸 처방. 기침, 콧물, 감기, 기침하여 목소리가 심, 疹癩(홍역), 汗氣, 熱候, 紅暈, 臀部癩形, 咳嗽(기침), 煩熱
- 惠慶宮: 癩形(홍역인 듯), 齒痛, 어금니와 뺨 사이의 부기. 빈궁 시절 홍역으로 복용하고, 순조대 치통 등으로 복용

## 특권층이 사용하는 귀중한 약재, 하지만 광범위한 효능: 內醫院의 용뇌 사용과 처방

- 왕실 가족의 용뇌 처방 사례
  - 正祖: 龍腦安神丸 처방. 癡形(홍역인 듯), 熱候, 蒸熱, 腫處. 1754년(영조 30) 전후 빈궁과 함께 홍역에 걸렸을 때 처방. 사망 직전에 복용
  - 純祖: 九味清心元, 龍腦安神丸 처방. 痘症(落痂), 汗氣, 騷癢(가려움), 熱候. 1801년(순조 1) 이후로 간간이 복용
  - 貞純王后(英祖妃): 龍腦蘇合元 처방. 순조 초년에 대왕대비로서 복용
- 이상의 처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 조선후기 역대 국왕, 왕비, 왕세자 등이 꾸준히 복용
  - 용뇌안신환, 용뇌소합원 등의 가공품 형태로 복용
  - 많은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한 증상에 효과가 있음: 가슴이 답답함, 체한 기운, 감기, 기침, 가래, 발열, 염증, 눈병, 통증, 가려움 등

## 醫書의 용뇌 처방과 용뇌 이용의 대중화

- 醫書에는 용뇌에 대한 다양한 처방이 제시되어 있음
  - → **별도의 표로 정리 중: 작업용 부표 c**
  - 『醫方類聚』(세종대 왕명 편찬): 중풍(심폐에 열이 있는 경우), 더위(熱喝, 暑毒), 어린아이의 慢驚風(어금니를 악물은 입을 벌리게 함)
  - 『醫林撮要』(선조대, 楊禮壽): 눈병, 염증(楊梅瘡, 杖瘡, 疥癬, 惡瘡), 통증(복통, 骨란), 瘡癤, 傷寒, 內傷病, 脫肛門, 해독(복어독에 중독), 소아의 오줌이 안 나올 때, 소아의 撮口(熱毒으로 인한 증상) 등
  - 『山林經濟』(숙종대, 洪萬選): 염증(허가 부어오름, 갓난아이 입안에 白屑이 낀, 豆瘡)
  - 『星湖僊說』(李瀾, 1681~1763): 홍역(마진)
  - 『靑莊館全書』(李德懋, 1741~1793): 통증(두통)
  - 『麻科會通』(丁若鏞, 1798): 막힌 것을 통하게 함(心虛, 心煩을 진정시킴), 홍역(마진)
  -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1788~1863): 홍역(마진)

##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 의서에 나타난 용뇌 처방의 특징
  - 용뇌의 기본적 성질인 1)막힌 것을 뚫게 하고, 2)청량감이 있어서 열을 식히며, 3)염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처방하였음
  - 고려시대에도 이미 알려진 용뇌의 약효는 조선전기 이래로 여러 의학서에 정리되어 왔으며, 유효한 병증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임
  - 앞서 왕실 가족에 대해 처방했던 증상들과 크게 보았을 때 일맥상통하지만, 소아에 대한 처방이 꾸준히 작성될 정도로 폭넓은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음 → 민간에서도 용뇌가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다만, 용뇌는 약성이 독하고, 기운을 소모시키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승정원일기, 영조 8, 1732.3.7.) 清爽함을 얻기 위한 '涼劑'라는 인식이 있었음(승정원일기, 영조 21, 1745.3.10. ; 순조 5, 1805.3.9.)

##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 醫書에는 용뇌를 포함한 여러 약재도 소개되어 있음
  - → **별도의 표로 정리 중: 작업용 부표 D**
  - 蘇合元: 중풍(담이 생긴 증상, 심기가 부족해 말을 못하고 발열하는 증상) 등을 치료
  - 牛黃清心圓, 牛黃涼膈圓: 蝦蟆瘟(얼굴이 붉어지고 목구멍이 아프고 붓는 병), 턱밑과 목 부위가 붓고, 입과 혀가 허는 증상
  - 清心丸: 經絡이나 心에 열이 있어서 정신이 황홀한 증상
  - 朱砂涼膈丸: 上焦에 허열이 있고 폐와 위, 인후가 답답한 증상
  - 靑金降火丹: 心肺의 허열
  - 玉容膏: 귀나 코가 허는 증상
  - 龍腦雞蘇圓: 코피와 토혈을 치료

##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 • 醫書에 소개된 용뇌 사용 藥劑

- 茯苓補心湯: 心虛
- 妙香散: 가슴이 울렁거리려 잠을 못자는 증상
- 龍腦安神圓 또는 龍腦安神丸: 癲癇症의 발작
- 截疔散: 疔癰瘡에 가루를 뿌리거나 고약으로 만들어 붙임
- 龍腦膏: 소아의 눈이 붉게 헛 것
- 靑黛散: 重舌(혀에 생기는 종기), 인후가 부은 데
- 九寶湯: 哮喘, 咳嗽로 인해 숨이 차고 가쁜 것
- 破棺散: 중풍으로 입을 다물어 약을 삼킬 수 없을 때
- 紫霞丹: 虛損
- 摩腰膏: 노약자의 허리가 아플 때, 부인의 白帶下
- 吹耳散: 신경에 풍열이 있어서 양 쪽 귀에서 고름이 나올 때

##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 • 醫書에 소개된 용뇌 사용 藥劑

- 生氣桃花散: 잇몸과 이에 피가 나옴
- 龍石散: 상초에 열이 몰려 입과 혀가 험고 목구멍이 부어서 아픔. 어린이의 홍역과 마마독이 입과 이에 들어갔을 때
- 燒鹽散: 목 안에 懸壅이 길게 늘어진 것
- 蝸牛散: 치질이 생겨 험고 부으면서 달아오르는 것
- 磨風膏: 머리와 얼굴에 생긴 癰疽, 瘡腫, 疥癬, 화상이 파상풍이 된 것을 치료
- 內固清心散: 열이 심하고 갈증이 나며 煩燥한 데에 독을 풀어줌
- 返魂丹: 疔腫(전염병에 걸린 소나 말 고기를 먹고 열을 쌓이고 독이 깊어서 생긴 병), 瘡病
- 靑金錠子: 농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오래 된 疔瘡, 漏瘡을 치료

##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 醫書에 소개된 용뇌 사용 藥劑
  - 截疳散: 해가 오래된 감창, 누창
  - 一捻金散: 癩疾(자궁이 빠져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는 병)
  - 金箔丸: 慢驚風, 急驚風에 가래와 침이 심한 것
  - 猪尾膏: 임신부의 두창
  - 上清散: 상초에 熱邪가 있어서 귀와 코가 막히고 머리와 눈이 편치 않은 것
  - 加味上清丸: 해수병으로 번열이 날 때. 목소리를 맑게 하며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함
  - 牛黃膏: 열이 자궁에 들어간 부인을 치료
  - 龍腦散: 인후가 붓고 아프며 脾肺의 邪毒이 胸膈에 물리면서, 죽이나 물도 넘기기 어려운 것

##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 醫書에 소개된 용뇌 사용 藥劑
  - 玉鑰匙: 風熱로 생긴 喉閉와 纏喉風
  - 絳雪散: 인후가 붓고 아파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괴로운 것과 입과 혀가 허는 것
  - 雞蘇丸: 虛熱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나른하며, 下焦는 허하고 上焦는 막혀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과 코피 나오는 것
  - 靑液散: 어린아이의 아구창, 중설, 구창
  - 桃奴丸: 마음이 허하고 열이 있고, 황홀함, 언어 착란
  - 玉容散: 얼굴에 생긴 기미나 땀띠, 여드름, 피부가 가려운 것

## 醫書의 용뇌 처방과 광범위한 용뇌 활용

- 용뇌로 조제한 약의 특징
  - 여러 가지 약재를 배합한 다양한 약이 있지만 용뇌 특유의 성질을 기대한 처방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공통적으로 답답하게 막힌 것을 해소해 주거나, 열기를 가라앉혀 염증이 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추구함
  - 호흡기, 소화기, 피부 질환, 중풍, 중기, 허리나 팔다리 등의 통증과 부기 등 광범위한 질환에 적용이 가능함
  - 15세기의 『救急易解方』부터 19세기의 『醫鑑刪定要訣』에 이르기까지 용뇌를 재료로 한 약이 꾸준히 언급되어 용뇌를 중요 약재로 사용한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민간의 용뇌 사용과 대중화

- 조선전기 용뇌 가공품의 대중화(세종실록 22년, 1440.11.22): 청심원을 응급약으로 사람들이 모두 사용함. 혜민국, 전의감에서 사다 쓰기보다는 의정부, 육조, 승정원, 의금부 등 각사에서 해마다 劑作하여 병 앓는 집이 인연을 따라 구해서 씀. 蘇合元과 保命丹도 경중과 외방의 각처에서 쉽게 제조하며, 市井의 무리들도 제조하여 이익을 보고 있음.
- 중종대 인물 安瓚은 典醫署 訓導로서 龍腦蘇合香元을 양치질을 하다가 혀끝에서 피가 나와 그치지 않은 어느 부인에게 지혈약으로 사용
- 1671년(현종 12) 안동의 효자 邊克泰가 도둑에게 큰 상처를 입었으나 부친의 꿈에 나타난 神人의 말을 따라 龍腦로 약을 써서 완치
- 18세기 황윤석이 눈병 치료에 용뇌를 사용. 흐르는 물과 함께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한 듯

## 민간의 용뇌 사용과 대중화

### • 의약품 이외의 용뇌 사용

- 敎命과 冊印을 넣은 櫝中에 龍腦를 넣음. 방충 효과를 기대한 듯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1751.12.19.)
- 왕비의 玉冊文의 粧冊에도 龍腦 및 小腦가 사용됨
- 이덕무의 『士小節』에서 여자가 잘 만한 쯤의 하나로 용뇌를 거론
- 향운석의 『頤齋亂藁』에도 名茶의 재료 중 하나로 용뇌를 언급. 화상이나 족자에 쓰는 꿀과 풀에 벌레가 먹는 것을 막기 위해 川芎, 麝香과 함께 용뇌를 쓴다고 함. 또한 算學 문제의 예시로 용뇌 등 약재가 나오며, 인삼, 우황과 함께 은과 교환되는 비율을 따짐.
- 『山林經濟』에 따르면 먹을 만들 때 침향, 사향과 함께 용뇌가 첨가됨. 향운석도 『이재난고』에서 편지와 함께 龍腦墨을 선물로 보냈다고 기록했음. 『홍재전서』에 의하면 청조도 都政 때 落點하면서는 용뇌먹을 사용하였다고 함
- 조선후기 왕실의 進宴에 올리는 음식물 재료로 용뇌가 사용. 대전에 올리는 別行果 중 '霜雪膏'가 있는데 재료로 사탕, 꿀떡, 꿀, 잣, 후추와 함께 용뇌 5분이 사용됨

【제2발표】

## 17세기 조일 인삼무역과 대마번(對馬藩)의 인삼 담론

이해진(동국대)

- 
1. 들어가며
  2. 17세기 중엽의 조일 인삼 무역 양상
  3. 조선의 禁蔘 정책과 對馬藩의 무역 재개 요구
  4. '人蔘의 길'과 對馬藩의 인삼 담론
  5.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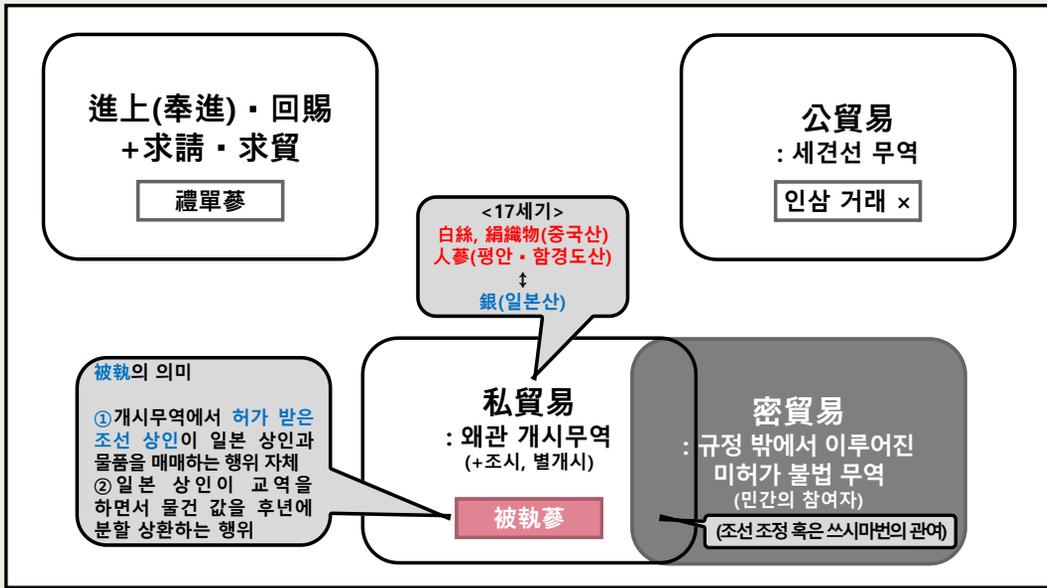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차 연구토론회> 2023. 09. 23. (토)

# 17세기 조일 인삼무역과 對馬藩의 인삼 담론

이해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 1. 들어가며

## ● 근세 조일무역 구조와 인삼 [田代81] [김동철99]



3

## ● 인삼 사무역에 관한 대표적 선행연구

### ■ [今村38]: 인삼 연구의 선구적 성과

- 인삼의 본초학적 정리, 한중일 삼국의 인삼 정책 및 무역 실태, 관련 설화 등

### ■ [田代81]: 對馬宗家文書(+조선 측 사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근세 조일무역의 구조적 고찰, 수량적 성과 도출

- 조일 사무역: 己酉約條(1609) 이후 사무역 개시, 정품·정량이 없으며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간의 거래로 출발, 본래 인삼은 금수품으로 지정
- 쓰시마번의 사무역 운영: 인삼 무역 독점, 1683년 商賣掛(이후 元方役) 설립 이후 무역 이익을 번이 직접 흡수, **조선이 인삼 수출을 통제하던 시기에도 밀무역으로 수입 계속**
  - '은의 길(Silver Road)': 조일무역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일본 사이에 무역로 형성
- 쓰시마번의 **실제 사무역 수익** 도출(기존 연구는 막부에 허위 보고된 내역 활용)
  - 도출된 수치에 대한 비판 및 정정: [中村92] [尾道97] [김동철] [정성일00] 등 ※ 추후 검토
- 이어서 1690년대 막부의 은 개주 정책(元祿銀) 이후 사무역 쇠퇴 및 이에 대한 쓰시마번의 대응 과정을 조명(1711년 이후 '人參代往古銀'의 통용)

### ■ 기타 한국의 연구성과로 [오성89·00] [양흥숙99] [양정필17] 등

4

# ● 인삼 사무역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제 제기

## 1. 17세기 전반기의 조일 사무역 양상에 관한 설명 부족: 【田代81】의 설명

“사무역에서 거래된 물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진삼·사무역과는 달리 정품·정액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무역 참가자 간 수급관계에 따라 때마다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참가자 자체가 조직화된 것이 아니었기에, 후일 만들어진 거래 장부류의 기록도 없고 연간 거래 품목이나 가격·수량 등의 동향은 전혀 알 수 없다.”  
 “사무역이 융성하여 쌍방의 무역 시행자가 큰 이익을 차지하게 된 것은 조선·중국 간의 상로가 확대되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은의 대량 수출이 가능해진 17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었다.”

➢ 對馬宗家文書에 남아있는 17세기 전반기의 사무역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2. 조선 조정의 입장: 17세기 후반의 禁蔘 정책과 무역 현황에 관한 【田代81】의 서술

“표(후술)에 제시된 인삼 수입고는 한편으로 조선의 관상과 일체화되어 이루어진 번 전체의 밀무역 실태를 보여준다. 즉 조선에서는 元祿 2년(1689)~동 7년(1694) 7월 사이에 왜관 사무역의 인삼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에 쓰시마번이 정규 루트로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영 무역의 예단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런데 표에 따르면 元祿 2년에 (중략) 확실히 전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제로가 아니었으며, 게다가 동 4년에는 (중략) 금령 이전보다도 오히려 수입이 늘었던 것이 판명된다.”

- 그러나 禁蔘 실시 연도의 오류 존재 【김동철99】(【田代81】은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誤讀)
- 그동안 밀무역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조선의 禁蔘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배경 및 영향)

## 3. 조일 인삼무역의 구조: 【田代81】이 이야기한 이른바 ‘은의 길’

- 그 상대되는 거래 물품인 ‘인삼의 길’ 또한 존재(+조정 변경의 越境 문제 【김선민08】)
- 일본 국내에서 인삼 무역의 배타적 권리 유지와 특혜 요구 및 상품가치의 어필을 위한 쓰시마번의 담론 【이해진21】 속에 ‘인삼의 길’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규명

# 2. 17세기 중엽의 조일 인삼 무역 양상

## ● 조선 조정의 대일 사무역 정책

### ■ 대일 사무역: 己酉約條 체결 이듬해인 1610년에 허가(월 6회의 대청개시)

- 인삼은 본래 금수품으로 고려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제약 해제
- **대명 인삼무역(사행무역 · 증강개시)**의 확대로, 대일 수출은 미진

### ■ 1638년에 조선 조정은 명과의 교류가 끊기고 청이 인삼을 禁物로 지정하자 **일본** 방면으로 인삼 수출 논의: 이전에는 사사로온 매매에 제약이 존재 【양정필17】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호조의 기사에 따르면 ‘唐貨가 오지 않게 된 뒤로 왜관에 물자를 매매하려 오는 자들이 끊어졌으니, 왜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여 몹시 낙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생산품이 없고 단지 인삼이 있을 뿐인데, 禁物로 규정되어 사사로온 매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사꾼들이 비록 몰래 매매하나, 이 또한 제값을 받지 못하므로 인삼이 폐장된 형편입니다. 이리하여 宦家에서도 세금을 받지 못하니, 당초 법을 세워 금단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매매를 허락하고 科條를 얹어 세워 그 세금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왜인은 시장을 개방하는 이익이 있고 우리나라는 생산품이 폐장될 근심이 없어질 것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 『비변사등록』 인조 16년(1638) 1월 30일

- 병자호란 이후 대명 교역이 완전히 단절되어 중국 상인이 조선에 오지 않자, 일본 상인의 물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生絲, 絹織物)
- 조선의 특산물인 **인삼**은 禁物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미 상인들이 몰래 거래 중인데,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
- 규정에 매매를 허락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조선과 일본 쌍방에 이익이 될 것

7

## ● 대일 인삼무역 합법화 이전의 상황

### ■ 1634년에 쓰시마번에서 왜관에 보낸 서한

一. 인삼 거래 건으로 오다 기노스케(小田儀之助)님이 건너왔습니다. 지금 나가사키(長崎)에도 물건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도 팔리지 않았으며**, 또한 그쪽에 있는 인삼을 이전 가격으로 사들여도 좀처럼 내년 중에 다 팔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 가을에 배당하지 않으면 곤란하므로, **가격을 낮춰 구매할 수 있도록** 궁리가 필요합니다. (후략)

- 『御商賣集書』(『分類記事大綱』 27), 寬永 11년(1634) 7월 25일 시마오 곤노스케(嶋雄權之助)에게 보내었다.

- 인삼이 팔리지 않으니, 작년보다 가격을 낮춰 구매하도록 지시
- 나가사키 방면에 물건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 ① 인삼의 **공급 과잉**으로 수지가 맞지 않음: **일본 국내의 수요 부족**
    - 나가사키에서 중국산 인삼도 수입했기 때문일까? (x)
  - ② 당시는 이른바 ‘제1차 쇄국령(1633)’ 발령 직후, 朱印船이라 할지라도 老中の 奉書가 없는 일본 선박은 해외 출항이 불가능한 상황: **일본의 대중국 교역 침체**
    - ✓ 쓰시마번이 나가사키에서 판매하던 인삼은 주로 포르투갈 ·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품 또는 중국으로 출항하는 일본 상인의 중계 무역품?

(다음 장 사료의 밑줄 부분)

8

# ● 17세기 후반의 인삼 무역

## ■ 1650년대의 양상: 조선-명 교역 단절 이후 여전히 사무역 침체

-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교역은 이전에 遼東 길이 안전하고 大明이 평안할 때는 상품이 충분히 들어왔지만, 그 후 繼朝國(후금·청)이 遼東을 단절시켜 왕복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大明이 국난에 빠져 (중략) 지금은 중국의 상품이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조선과 唐(중국) 사이의 사신 왕복을 겸해서가 아니라면 무역품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므로, 한 해에 5~600貫目 이상은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 중에서 생사는 조선 내에서 거래한다고 洪知事 등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들이는 상품은 미비한 양입니다. 또한 조선에서 나는 물품 중에 인삼 외에는 무역품이 없지만, 이 또한 최근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전혀 팔리지 않으므로, 조선에서 상품을 바꿔와도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 조선과 나가사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추측하기 힘듭니다.
- 담당자가 아뢰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오우라 곤다유(大浦權大夫)와 다나카 사부로에몬(田中三郎右衛門)이 부산포로 건너와 이후에는 무역을 확대하고 싶다고 조선인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의 동래부사가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곤다유 등이 이야기한 바는 ■■ 및 상인들도 잘 알아들었기에, 올 봄에 白絲와 ■ 등을 적절히 가져왔지만, 왜관 내에 은자나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오히려 조선인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해도 앞에 적은 것처럼 다량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상품이 없는 이유는 작년에 가미가타(上方)에서 무역에 관해 상당한 사카이(堺)의 상인들이 조선 쪽의 무역에 확신이 없었는지 은자나 상품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올 봄에 사카이 상인들이 오사카(大阪)에서 주군께 간절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모두 안심하여 그 후에는 상품 등을 간간히 가져옵니다.

- 『御商賣集書』(『分類紀事大綱』 27), 承應 2년(1652) 6월 23일 에도의 도보 사쿠자에몬(唐坊作左衛門)과 구로키 소자에몬(黒木惣左衛門)에게 보내었다

- 조선의 중국산 무역품(白絲, 絹織物) 공급 부진
- 일본 국내로부터의 은과 상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음
- + 조선산 물품은 중일무역 부진 후 국내 수요만으로 수지가 맞지 않음
- 단, 원화화의 조짐이 보임(무역용 은자와 상품 확보)

9

# ● 인삼 무역의 전성기 【田代81】

## ■ 1660년대 이후의 양상

- 1661년 청의 遷界令 하달: 나가사키의 중국인 입항 중지(조일무역의 중요성 강화)
- 1660년대부터 일본 국내 약재 수요 증가
  - 『변례집요』: 쓰시마번의 의약서, 인삼 求講 빈도와 수량 증가
- 일본 국내 인삼의 대유행 및 유통의 활성화
  - 1674년에 에도에 人參座를 설치

## ■ 쓰시마번의 사무역 직접 운영

- 이전에는 상인에게 왜관에서 무역을 실시할 권리를 위임한 후 징세
- 1683년에 사무역을 전담하는 쇼바이가카리(商賣掛, 후일 모토가타야쿠[元方役]로 개칭) 설치

## ■ 막부의 무역 정책 변화

- 1684년 청의 遷界令 해제(展海令): 나가사키로 입항하는 중국 선박이 폭증
  - 나가사키의 관리 및 과도한 은 유출 문제가 발생
- 定高仕法(1685): 나가사키로 입항하는 중국·네덜란드 선박의 연간 무역량을 통제
  - 이듬해에 쓰시마번과 사쓰마번의 무역에도 제약을 가함
- 그러나 쓰시마번은 준수하지 않음: 이중 장부 작성, 실제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
  - 1690년대 상반기에 사무역의 전성기를 맞이

10

# 3. 조선의 禁蔘 정책과 對馬藩의 무역 재개 요구

## ● 1684~1695년 인삼 무역 거래량

### ■ 【田代81】의 오류: 禁蔘 기간을 1689~1694로 설명

- 근거 사료의 誤讀: 禁蔘 정책이 완전히 해제된 연도에 맞춰 해석

一、元祿二年(1689)、朝鮮國人參を売込候儀停止被仕、甚御指支被成候付、裁判平田所左衛門渡海被仰付、礼曹へ御書翰を以被仰越候得者、最初之返答ニ、人參之種甚少、殊ニ奸民共事を生し候患有之、貿易を指留候との事候處、所左衛門逗留いたし居、様々致熟望、其後四(五ヵ)年目より入送有之候、右人參を不売込間者、朴同知色々ニ勸き入送仕たる由、

- 『隣交要事』(東京大学史料編纂所 写本所蔵)

- ‘四年目’: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이 교섭한 지 4년 째가 되는 元祿五年(1692)에 인삼 거래가 재개됨(대일무역에 한하여 특허)

➢ 거래되지 않는 동안은 역관이 중재해서 거래함

- 禁蔘 시작 연도는 【김동철99】 【양정필17】의 지적과 같이 1686년

병인년(1686)부터 조선이 인삼 매매를 금지하여 7~8년간 인삼이 통용되지 않자, 元祿2 을사년(1689)에 사이한(裁判)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이 파견되어 주군의 서한으로 인삼 통용 건을 예조에 이야기하였지만 답서로 이야기하기를, “인삼이 근년에 중자가 크게 줄어 禁制를 실시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약용에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바에 응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쇼자에몬이 4년간 (왜관에) 체류하며 여러 모로 동래 부사에게 이야기하여 (조정으로) 보고하게 하였는데, 그후 드디어 조정이 인삼 매매를 허락하였다. 따라서 조정에서 인삼 매매를 허락한다는 서한을 元祿5 임신년(1692) 9월 29일에 안동지·卞同知·韓金正가 쇼자에몬의 집으로 가져왔기에, 조선에서 쇼자에몬이 家老들에게 보내왔다. 서한은 아래와 같다. (후략)

- 『朝鮮國人參買売禁制之時裁判平田所左衛門被差渡朝鮮ヨリ人參買売被差許書付』(『分類紀事大綱』附錄1)

연도	실 수입고 (斤)	총 수입 내 비율 (%)
1684(貞享元)	894	21
1685(貞享2)	621	8
1686(貞享3)	2,617	21
1687(貞享4)	491	3
1688(元祿元)	904	8
1689(元祿2)	593	8
1690(元祿3)	713	5
1691(元祿4)	3,703	29
1692(元祿5)	2,315	19
1693(元祿6)	3,376	28
1694(元祿7)	6,541	36
1695(元祿8)	0	0

단, 인삼 거래가 제한된 동안에도 다른 물품으로 사무역 규모 유지

## ● 조선의 禁蔘 정책

### ■ 조선 국내의 인삼 부족: 1682년 대정 인삼 수출 금지 (『비변사등록』 숙종 8년 4월 16일)

- 단, 조선 조정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삼상들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됨 [양정필17]

### ■ 강계 지역 채삼인의 犯越+放砲 사건(1685)

- 17세기 전반에도 빈번히 발생, 청과의 외교 분쟁을 초래
- 조선 조정은 **변경의 인삼 채취를 금지**하고, 사건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 삼상의 활동을 금지**하자는 논의 시작(『숙종실록』 11년 12월 18일, 12년 1월 8일)
- 이듬해에 「**南北蔘商沿邊犯越禁斷事目**」을 제정(1686년 10월 10일 재가)

(왜관의 인삼무역 관련 조항)

一. 동래 왜관에서는 예소에서 예단을 준 후, 기타 교역에서 일체 蔘貨를 금지하도록 한다. 모든公私의 물화는 별차·훈도·수세산원·감시군관·개시감관 등을 대동하여 수색해 조사한 후 주어 들여보내 교역하게 하며, 만일 **삼화가 현장에서 적발된 자가 있으면 동래부사가 가두고 보고한 후 관문 밖에서 호시하며**, 수색할 때 혼동해서 주어 들여보내고 적발하지 못하여 뒤에 탄로난 자가 있으면 군관·훈도·별차 이하를 잡아서 문초하게 한다. 만일 정상을 안 일이 있으면 범인과 일체로 처단하도록 하며, 동래부사가 적발하지 못하고 다른 일로 인해 적발되면 역시 잡아서 문초해 죄를 다스리게 한다.

- 「南北蔘商沿邊犯越禁斷事目」(『비변사등록』 숙종 12년(1686) 1월 6일, 해당 事目은 동년 10월 10일 재가)

- ✓ 해당 事目的 재가(1686년 10월) 직전에 오히려 인삼 거래가가 상승하고 재고 거래가 폭증하지 않았을까?

13

## ● 밀무역의 빈발

### ■ 禁蔘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관에서는 밀무역 사건이 빈발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다 번고가 생긴 뒤, 함흥과 삼수·갑산 사이에는 비축된 인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령이 실시된 초기여서 감히 내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동래의 小通事들이 몰래 바꿔 다시 왜인들에게 판다고 합니다.

- 『비변사등록』 숙종 13년(1686) 4월 4일

- **역관이 밀무역에 가담**, 중개역을 수행(禁蔘 기간에도 인삼 수량 확보가 가능했던 배경)

### ■ 1688년 왜관의 쓰시마인과 조선인 사이에 밀무역 사건 발생

- 조선은 범인을 호시한 뒤, 일본 측 가담자도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요구

이에 앞서 동래 사람이 館僉에게 인삼을 팔았다가 그 일이 발각되자, 동래부에서는 그 사람을 법대로 죽였으나 왜인은 인삼을 산 자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래부에서는 누차 법을 어기면 서로 어긴 자를 죽이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힐문하였지만, 왜인은 끝내 듣지 않았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島主가 지시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府使 李德成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보고하니, 備局에서 청하기를, “역관을 통해 館僉에게 계묘년(1663)의 전례에 따라 島主에게 힐문하겠다고 다그치면 저들이 놀라 태도를 고칠 것입니다.” 하였다. 李德成이 역관을 통해 館僉에게 다그치니 관왜가 말하기를, “인삼은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찾습니다. 그리고 島主가 江戶에 이를 進貢해야 하는데, 금제가 구애되어 매매할 수가 없기에 이번 지시는 부득이 한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렇지 않다면 어찌 감히 서로 법을 어긴 자를 죽이기로 한 약속을 어길 수 있었습니까? 조정에서 역관을 보내오면 제가 島主로 통고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李德成이 장계를 올리기를, “館僉가 스스로 범하고도 島主에게 미루는 짓을 굳이 꺼리지 않습니다. 도주가 정말로 지시하였더라도 다를 없습니다. 따라서 서계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적되, ‘도주는 분명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관왜가 미루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관왜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주는 스스로 금법을 범한 것이니 매우 불가한 처사이다.’라고 한다면, 사정에 혹여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개시를 정지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을 따지는 일은 법에 당연합니다만 정사가 서로 통하지 않아 이미 원망이 많습니디. 이는 교린의 우호를 온전히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備局에서 李德成의 말을 따르고 또한 개시를 허락하도록 청하였다.

- 『숙종실록』 15년(1689) 윤3월 7일

- **번이 직접 참여한 밀무역**, 조선은 서계를 보내 추궁하고자 함

14

## ● 쓰시마번의 인삼 무역 재개 요청 (추가 검토 필요)

- 1688년 쓰시마번은 번주의 回棹를 알리는 명목으로 히라타를 조선에 파견
  - 표면상의 목적은 문위행의 파견 요청(인삼 무역 재개 교섭을 위한 명분)
- 1689년 5월 히라타는 **번주의 서계**를 통해 조선에 인삼 무역 재개를 정식 요청
  - 조선은 거절(앞의 사료)
- 이보다 앞서 히라타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
  - 인삼 교역의 정체는 역관에게 이야기해서 해소할 기미가 보인다
  - 한양의 거상이 인삼 300근을 청부 받는다고 한다
  - 정식 교섭과는 별개로, **역관의 중개를 통한 비합법적인 인삼 거래 루트**를 확보
- 1689년 말에 히라타는 **문위행**을 대동하고 쓰시마번으로 도해
  - 조선이 문위행을 통해 밀무역을 추궁하는 예조참의의 서계를 보내려 하자, 수정 요구
    - 문위행 서계는 때때로 막부에 보고하기 때문(결국 조선은 동래부사의 명의로 서계 발송)
  - 번 내에서 이루어진 문위행과의 물밑 교섭(**미검토 사항**)

15

## ● 조선 조정의 인삼 무역 재개 허가

- 인삼 거래가 중지된 기간에도 조정에서는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 밀무역의 빈번한 발생: 재차 왜관의 밀무역을 금하는 조항 하달(**밀무역의 성행을 반증**)
- 一. 한번 蔘路를 엄금한 뒤로 간교한 무리가 감히 專利할 꾀를 내어 밀매하는 폐단이 요즈음 더욱 심하다. 상인들이 비록 극비에 에 붙이나 그 거래 내용을 동래부 및 이웃 고을 사람도 반드시 들어서 안다. 고발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화는 전액 지급하고, 공·사선은 특별히 免贖토록 하며, 양인인 경우는 加資한다. 노부세 및 기타 잡상을 고발한 사람의 상도 똑같이 시행한다고 특별히 도내에 알린다.

- 『東萊商賈定額節目』(『비변사등록』 숙종 17년(1691) 7월 16일)
- 강계 지역 주민들의 생계 곤란(**犯越+放砲 사건이 여전히 재발**)
  - 조정의 **禮單蔘 확보 곤란, 蔘稅 징수의 이익 고려**
- 1692년 8월 히라타는 島主가 에도에 인삼을 납부하지 못하면 太守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며 **特許**를 요청 (『변례집요』 16, 「개시」 壬申(1692) 8월)
  - 9월 부로 허가의 뜻을 전하는 서한이 전달됨(앞의 사료)
  - ✓ 교역 재개로 **1692년 이후의 무역량 증가**는 설명 가능(단, 1691년의 수치에 대한 해명이 과제)
- 1694년 조선은 변경 지역 백성들의 생계를 위해 채삼과 매매의 시한을 정하는 조건으로 **禁蔘 조치를 해제** (『비변사등록』 숙종 20년(1694) 12월 26일)

16

# 4. ‘人蔘의 길’ 과 對馬藩의 인삼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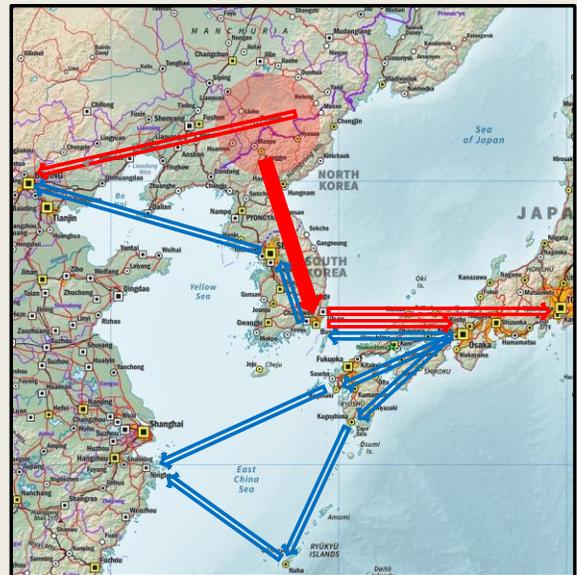
## ● ‘銀의 길’ 과 ‘人蔘의 길’ [17세기 말~18세기 초]

### ■ 조일 사무역에서 거래되는 인삼

- 山蔘: 평안·함경도(강계)와 만주의 접경지역이 주요 산지
- 犯越 문제(+放砲): 외교문제로 발전되어 1686년 禁蔘 정책의 배경이 됨
- 개성 상인의 유통 참가 [양정필17]
- 역관: 거래를 중개하거나 혹은 직접 참가하기도 함 [양흥숙99]
- 동래의 왜관에서 거래됨

### ■ 불규칙한 인삼 수급량

- 당시 일본 국내의 인삼 유통은 쓰시마번이 독점
- 인삼이 유행으로 항상 공급량 부족
- 인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쓰시마번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 ● 인삼의 희소성 강조

■ 1679년 인삼 공급량이 부족하자 쓰시마번이 인삼을 창고에 쌓아 두었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풍문이 있다고 막부에서 경고, 쓰시마번은 해명【今村38】

- ① 본래 인삼은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채취하는 것이어서 해마다 많고 적음이 있음
- ② 교토와 오사카의 판매상들에게도 배분(각 600근)하기 때문(에도는 300근)
- ③ 관리가 힘들어 이익도 없으니, 수입 인삼 전량을 막부에 헌상하고자 함(→막부는 반려)

■ 1684년에 쓰시마번은 老中에게 올린 「朝鮮通信之覺書」에서 ①의 논리 보강

一. 인삼은 조선에서도 씨앗을 뿌려 땅 위에 경작하는 것이 아니며, 깊은 산의 풀이 무성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저절로 납니다. 게다가 조선에도 남쪽은 땅이 따뜻해서 거의 없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서북쪽 땅이므로 두 도내에는 산세가 깊은 곳이 있지만, 여진국과 이어지는 험준한 높은 산이며 눈이 많이 오고 호랑이가 많은 곳이어서 원사리 왕래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무성한 풀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찾아내기 힘듭니다. 게다가 조선에서도 많이 사용하며 중국에서도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오는 것은 해에 따라 뛰어난 것과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 「人參之事」(「朝鮮通信之覺書」, 1684)

- 조선에서도 평안도와 함경도의 산세가 험한 곳에서만 생산됨
- '여진국'과 이어지는 데다가 호랑이가 많고 풀이 무성한 곳
- 인삼 수급의 곤란 및 희소성(상품 가치)의 강조를 위해 조선의 인삼 생산 현황을 설명

19

## ● '人參代往古銀' 교섭 논리

■ 1695년 막부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은화 품위를 기존 80%(慶長銀)에서 64%(元祿銀)로 낮추는 정책을 실시【田代81】

- 은을 상품으로 삼아 조선과 무역을 실시하던 쓰시마번에게 직접적 타격
- ① 조선과 교섭하여 新銀을 27%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1699년부터 정식 실시
- ② 막부에 청원하여 수출은 액수(1,080貫)를 1,800貫으로 증액(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함)

■ 1706년에 막부는 재차 은화 품위를 50%(寶永銀)로 낮춤

- 조선 상인들은 아예 거래를 거부
- 막부에 特鑄銀 요청: **순은 지급을 요청하고, 양보 차원에서 慶長銀과 같은 비율을 허가 받을 계획**

에 전부터 元字銀(元祿銀)을 조선에 지불하고 인삼을 사서 조달했는데, 은의 품위가 다르기 때문인지 추가금을 더해 구매해도 이전 만큼 가져오지 않아 곤란스럽습니다. 조선의 변경 사람들은 지금도 元字銀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상인들이 궁리해 내어 조선 내에 비축된 元祿銀(元祿, 1688~1704) 이전의 古銀(慶長銀)을 추가금을 내고 바꿔서 인삼을 구매하여 우리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조달 방법과는 달리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줄곧 조선 상인들이 희망해왔듯 게이초(慶長, 1596~1615) 이전처럼 灰吹上銀(순은)으로 통용하고 싶다고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게이초 이후에는 灰吹上銀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라면 지금 허락된 은의 액수만큼 灰吹上銀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략)

- 「口上覺」(「朝鮮渡銀位御願之通往古銀御免披蒙仰候記錄」 壹, 寶永 7년(1710) 6월 14일)

- 조청 무역은 순은으로 거래, 변경 지역민들은 元祿銀을 사용하지 않아서 상인들이 慶長銀으로 환전하여 인삼을 구매하므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 따라서 그들이 순은 지급을 원한다고 함
- (+ 이 외에도 쓰시마번은 같은 문서에서 '誠信之道'론과 '무역=御用'론을 주장【田代06】【이해진21】)

20

# 5. 나오며

## ● 본 발표의 요지

1. 조일 인삼 무역의 공식적 시작: 1638년 조선 조정의 논의 이후
  - 그러나 그전부터 암암리에 왜관에서 인삼이 거래되었음
  - 단, 조선의 승인 후에도 조일간의 무역 수지는 물론, 일본 국내의 상장과 나가사키 무역의 현황(일본의 대외무역 전반) 등 복합적인 조건이 부합한 후에야 인삼 무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짐
  - 1660년대부터 국내 수요 증가로 무역 활성화, 막부와 조선의 무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다가 막부의 화폐 개주 정책(1690년대 후반) 이후 하향세로 접어들
2. 조선의 禁蔘 정책(1686~1694)
  - 계기는 생산지의 현황: 강계 지역 채삼인들의 犯越로 인한 대청 외교분쟁이 발단
    - 북변의 犯越 문제가 남방의 대일 무역에도 영향을 끼친 결과(실제 인삼 무역 규모 감소)
  - 쓰시마번의 대응: 공식(번주의 서계로 청원) / 비공식(밀무역으로 물량 확보) 방법 병용
    - 특히 禁蔘 정책이 이완되는 시기에 무역량이 증가하는 추세
  - 1692년에 조선은 대일 무역에 한하여 특히, 1694년에 규제 고려 후 禁蔘 정책 철회
3. 쓰시마번의 인삼 담론: 인삼 무역 독점 및 상품 가치 강조를 위한 이권 논리
  - 원산지인 강계·만주의 접경 지역에서 뻗어 나오는 '인삼의 길' 제시
  - '誠信之道'론: 조청 외교·무역 관계의 전체적 구조를 통한 '민폐(迷惑)'의 논리

## ● 참고문헌

### ■ 연구서

- 今村 綱, 『人參史』 2・3, 朝鮮總督府專売局, 1938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_\_\_\_\_,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2006
- 오성, 『朝鮮後期 商人研究』, 一潮閣, 1989
- \_\_\_\_\_, 『朝鮮後期 商業史研究』, 한국연구원, 2000
-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 ■ 연구논문

- 中村 質, 「近世日朝私貿易論の再檢討」,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下, 탐구당, 1992
- 尾道 博, 「朝鮮人參の輸入高をめぐる問題点」, 『日本文理大學商經濟會誌』 15-2, 1997
- 김동철,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蔘」, 『한국민족문화』 13, 1999
-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1999
-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탐라문화』 55, 2017
- 이해진, 「17세기 말~18세기 초 쓰시마번의 대막부교섭 논리 변화: '通交'의 개념적 확장과 '藩屏의 武備'론의 등장」, 『일본역사연구』 55, 2021

23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발표】

## 청대 호남선 빈랑(檳榔) 중독과 원인 고찰

김현선(동국대)

- 
- I. 머리말
  - II. 빈랑 전파와 빈랑 문화의 형성
  - III. 빈랑 중독의 원인
  - IV. 맺음말



## 청대 호남성 檳榔 증독과 원인 고찰

김현선(동국대)

-목차-

- I. 머리말
- II. 빈랑 전파와 빈랑 문화의 형성
- III. 빈랑 증독의 원인
- IV. 맺음말

빈랑(Semen Arecae)은 종려나무과 상록교목인 빈랑나무의 종자이며, 仁頻, 賓門, 檳欖子 大腹子, 洗瘡丹 등으로도 불리웠다. 빈랑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원하였으며, 이후 점차 서쪽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의 경우 한무제가 南越을 평정한 후 남월에서 각종 기이한 식물을 上林苑의 扶荔宮 안에 심었는데, 그 가운데 빈랑이 백 그루 이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 전파된 후 빈랑은 海南, 臺灣, 雲南, 廣西, 廣東 등 지역에서 재배되었다.

한편 빈랑은 냉증을 치료하거나 기생충을 퇴치하는 의약적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四大南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었다. 또한 많은 고전에 장기에 의한 질병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의 영남 지역은 장기가 만연한 곳으로 사람들은 장기에 의한 질병을 막기 위해 빈랑을 먹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빈랑에 “吉祥如意” 즉 “상서롭게 뜻하는 바와 같이 되다” 등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관혼상제와 같은 풍속에서 중요한 물품으로 여겨졌다. 즉 빈랑의 전파와 식용은 중국 내에 하나의 빈랑 문화를 형성하였다. 다만 재배 조건의 한계로 인해 빈랑문화는 중국의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淸末 영남 지역에서 빈랑을 씹는 풍습은 점차 사라졌다. 반면 청대 이르러 호남성에서 사람들이 빈랑을 씹었으며, 나아가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빈랑 문화와 산업을 형성했다.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 빈랑은 매우 중요했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빈랑을 씹는 풍습은 계속되었다.

본고에서는 호남성에서 빈랑 확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사람들의 빈랑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한 빈랑 광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증독성을 가진 물질이 한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는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4발표】

##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남민구(동국대)

---

I. 들어가며

II. 15세기까지의 정향 산지 및 조달 관련 기록

- (1) 중국 연안 지역 문헌에서의 기록
- (2) 명실록에서의 정향 조공 기록
- (3) 『大明會典』 속 정향 조공 기록
- (4) 조선실록의 기록

III. 16세기 중반 이후 정향 조달의 다각화

- (1) 16세기 중국 민간 해상의 정향 교역
- (2) 17세기 몰루카를 둘러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싸움

IV. 청대 정향 조달의 변화

- (1) 강희 5년 유구국 조공 품목 축소
- (2) 강희 19년·32년 유구국 조공 품목 축소
- (3) 새로운 정향 조달자로 등장한 네덜란드

V. 맺음말



##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남민구(동국대학교)

I. 들어가며
II. 15세기까지의 정향 산지 및 조달 관련 기록
(1) 중국 연안 지역 문헌에서의 기록
(2) 명실록에서의 정향 조공 기록
(3) 『大明會典』 속 정향 조공 기록
(4) 조선실록의 기록
III. 16세기 중반 이후 정향 조달의 다각화
(1) 16세기 중국 민간 해상의 정향 교역
(2) 17세기 몰루카를 둘러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싸움
IV. 청대 정향 조달의 변화
(1) 강희 5년 유구국 조공 품목 축소
(2) 강희 19년·32년 유구국 조공 품목 축소
(3) 새로운 정향 조달자로 등장한 네덜란드
IV. 맺음말

### I. 들어가며

- 흔히 정향의 원산지는 '향료제도(Spice Islands)'로도 알려진 말루쿠제도(Maluku Islands) 혹은 몰루카제도(Molucca Islands)라고 알려져 있음
- 오늘날에는 정향의 산지가 다양하지만 근대 이전 시기에는 사실상 말루쿠제도 일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정향이 산출된다고 봐도 무방
- 그러나 근세 시기 중국 문헌에 기재된 정향의 중국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이와는 조금 다름
- 북건에서 작성된 문헌에는 확실히 '東洋'<sup>1)</sup>에서는 말루쿠제도에서만 정향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西洋'<sup>2)</sup>에서는 인도네시아 자바(Java) 반텐(Banten)과 베트남 남부 참파(Champa)에서만 난다고 기록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향을 중국에 운반해온 주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II. 15세기까지의 정향 산지 및 조달 관련 기록

#### (1) 중국 연안 지역 문헌에서의 기록

- 명대 북건 漳州府 출신 張燮이 편찬한 지방지 『東西洋考』에 의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美洛居' 혹은 '米六舍' 즉 몰루카(Molucca, 오늘날 말루쿠Maluku)에서만 난다

1) 이때 東洋은 대략 브루나이를 기점으로 그 이동 지역을 말함

2) 이때 西洋은 대략 브루나이를 기점으로 그 이서 지역을 말함

고 기록

- 『東西洋考』 권5 「東洋列國考」 중 美洛居, “丁香：東洋僅產于美洛居, 夷人用以辟邪, 曰, 多置此, 則國有王氣. 故二夷之所必爭.”
- (道光) 『廣東通志』 권330 「嶺蠻傳」 중 附外蕃, “美洛居, 俗訛爲米六合. 居東海中, 頗稱饒富. 地有香山, 雨後香墮沿流滿地, 居民拾取不竭. 東洋不產丁香, 獨此地有之. 可以辟邪. 故華人多市易.”
- 또한 『東西洋考』에는 ‘下港’ 즉 반텐(Banten, 오늘날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과 ‘占城’ 즉 참파(Champa, 오늘날 베트남 남부)에서만 난다고 기록됨
- 『東西洋考』 권3 「西洋列國考」 중 下港, “丁香：生深山中, 樹極辛烈, 不可近. 熟則自墮, 雨後, 洪潦漂山, 丁香乃湧澗溪而出. 撈拾數日不盡. 宋時充貢.”
- 『東西洋考』 권2 「西洋列國考」 중 占城, “丁香：宋時充貢, 『本草』註曰, 樹高丈餘, 凌冬不凋, 葉似櫟, 而花圓細, 色黃, 子如丁, 長四五分, 紫色, 中有粗大, 長寸許者, 呼‘母丁香’, 擊之, 則順理而折.”
- 말루쿠와 반텐은 수천 km 떨어져 있지만 바다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음
- 송대에는 반텐과 참파가 정향을 중국에 조공한 것을 알 수 있음

(2) 명실록에서의 정향 조공 기록

- 반면, 『明實錄』에서는 정향을 조공한 국가로는 暹羅(斛)國과 三佛齊國뿐이었음
- 외국의 정향 조공 관련 『명실록』 기사

명실록 권수	연월일	보내온 나라	인물(사신)	목적
태조고황제실록 권71	홍무5년 정월 14일	暹羅斛國	寶財賦	조공
태조고황제실록 권114	홍무10년 8월 11일	三佛齊國	生阿烈足諫	조공
태조고황제실록 권195	홍무22년 정월 16일	暹羅斛國	冒羅	조공

- 그러나 정향 조공 기록은 모두 태조 시기에 몰려 있음
-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1. 정향은 조공을 통해서만 조달되었는가? 아니면 민간 상인들도 조달했는가?
  2. 『명실록』 기록처럼 섬라는 명초에만 정향을 바쳤는가?
  3. 왜 유구는 『명실록』에 정향 조공 기사가 없는가?

(3) 『大明會典』 속 정향 조공 기록

- 『大明會典』 속 ‘貢物’로 ‘丁香’을 바친 나라로는 暹羅國, 淳泥國, 蘇門答刺國, 琉球國, 滿刺加國
- 이중 비교적 명초부터 꾸준히 조공을 바친 나라는 섬라국, 유구국
- 『명실록』에서 유구국의 조공 관련 기사는 崇禎 연간까지 꾸준히 나오지만 공물로 가져온 유구국 方物 품목은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음
- 이와는 별도로 유구국에서는 별도의 다른 향을 조공했다는 기록이 보임
- 특히 명 황제의 능에 進香하거나 경하를 위하여 進香을 했다는 기록이 보임

- 『명실록』 유구국 '쑤' 관련 기사
- 이러한 향은 정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권수	날짜	발신자	전달자	목적	물품
태조고황제실록 권199	홍무23년 정월 26일	琉球國 中山王	屋之結 (通事)	조공 (附致)	乳香 10근
선종장황제실록 권16	선덕원년 4월 11일	琉球國 中山王 尙巴志	鄭義才	進香 (長陵)	香
선종장황제실록 권27	선덕2년 4월 18일	琉球國 山南王 他魯每	安丹結制	進香 (長陵)	香
효종경황제실록 권36	홍치3년 3월 29일	琉球國 中山王 尙眞	馬仁	進香 (賓天)	香
세종숙황제실록 권14	가정원년 5월 3일	琉球國 中山王 尙眞	達魯加尼	進香 (慶賀)	香

#### (4) 조선실록의 기록

- 『조선실록』에는 외국으로부터 정향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음
- 『조선실록』 가운데 유구국으로부터 정향을 받은 기록을 살펴보면 유구로부터 예물이나 대장경 요청을 위하여 정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
- 이는 1450년대부터 1500년까지 집중되어 있음
- 즉 정향은 15세기까지는 琉球國王 수준에서 조선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권수	날짜	발신자	전달자	목적	물품
세조실록 권12	세조4년(천순2년, 1458) 3월 9일	琉球國王	友仲僧 등 8명	표류인송환 禮物	정향 100觔
세조실록 권12	세조4년(천순2년, 1458) 3월 11일	琉球國王	使人	대장경에 대한 답례, 표류인송환 禮物	정향 100觔
세조실록 권26	세조7년(천순5년, 1461) 12월 2일	琉球國 中山王	普須古, 蔡璟	표류인송환 禮物	정향 100斤
성종실록 권81	성종8년(성화13년, 1477) 6월 6일	琉球國王 尙德	內原里主	표류인송환 禮物	정향 300斤
성종실록 권260	성종22년(홍치4년, 1491) 12월 2일	琉球國王 尙圓	耶次郎	대장경 요 청	정향 100斤
성종실록 권279	성종24년(홍치6년, 1493) 6월 6일	琉球國王 尙圓	梵慶, 也次郎	대장경 요 청	정향 100斤
연산군일기 권39	연산6년(홍치13년, 1500) 11월 17일	琉球國 中山王 尙眞	使臣	대장경 요 청	정향 200斤

- 반면 일본으로부터 정향 혹은 丁香皮를 받은 기록도 있음
- 그러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향의 양은 유구에 비해 한창 적음
- 또한 대부분은 정향피를 받은 기록밖에 없음, 정향피는 정향나무의 껍질을 의미
- 따라서 유구가 정향을 대량으로 조선에 공급한 주체였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그 시기가 매우 한시적

권수	날짜	발신자	전달자	목적	물품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영락 16년, 1418) 10월 29일	日向州太守 源氏 島津元久	遣人	물품 교환 (?)	丁子香 4箇
상동	상동	日本國 關西道 筑前州 石城官府 平滿景	遣人	물품 교환 (?)	정향 2斤
세종실록 권19	세종5년(영락21년, 1423) 1월 28일	肥州太守 源昌淸	-	陳慰	丁香皮 10斤
세종실록 권21	세종5년(영락21년, 1423) 9월 18일	日本九州前總管 源道鎮	-	대장경 요구	丁香 5斤반,
세종실록 권21	세종5년(영락21년, 1423) 9월 24일	日本國 筑前州太守 藤源 滿貞	-	답례	丁香皮 65斤
세종실록 권22	세종5년(영락21년, 1423) 10월 15일	筑前州管事 平滿景	使人	鞍子 요구	丁香皮 100斤
세종실록 권22	세종5년(영락21년, 1423) 10월 18일	日本國 九州 源 義俊	使人	-	丁香皮 50斤
세종실록 권22	세종5년(영락21년, 1423) 11월 24일	日本國 平滿景	使人	회례사	丁香皮 5斤
세종실록 권34	세종8년(선덕원년, 1426) 11월 1일	日本 筑州 石城 管事 宗 金	使人	도서를 보내준 것에 대한 답례	丁香皮 3斤

### Ⅲ. 16세기 중반 이후 정향 조달의 다각화

#### (1) 16세기 중국 민간 해상의 정향 교역

- 16세기 중반에 이르면 정향은 중국 민간 상인의 운송 물품 중 하나로 등장
- 용경원년(1567) 해금의 조항을 깨고 중국 상선 중 복건 漳州府 海澄縣 月港으로 출항하는 상선은 해외로 교역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짐

- 만력 3년, 월항으로 들어오는 중국 상선이 신고 온 물품에 대하여 일종의 관세가 매겨짐, 이를 陸餉이라 함
- 육향은 만력3년(1575) 福建巡撫 劉堯誨 때에 시작, 상선이 신고 온 각 물품 항목마다 관세가 매겨짐
  - 『東西洋考』 권7 「餉稅考」 중 陸餉, “萬曆三年, 陸餉先有則例, 因貨物高下, 時價不等, 海防同知葉世德, 呈詳改正.”
- 그러나 『東西洋考』에는 만력3년 당시 육향 부과 물품의 구체적인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東西洋考』에는 만력17년(1587) 복건순무 周察가 陸餉貨物抽稅則例를 비준하였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음
  - 『東西洋考』 권7 「餉稅考」 중 陸餉, “萬曆十七年, 提督軍門周詳允陸餉貨物抽稅則例.”
- 이 기사에는 만력17년 당시 육향 부과 물품의 가격이 적혀 있음, 이에 의하면 丁香은 100斤에 1錢 8分(0.18兩)의 稅銀이 부과되었음, 또한 丁香枝는 100斤에 2分(0.02兩)의 稅銀이 부과되었음
- 이어서 『東西洋考』에는 만력43년(1613)에는 만력제가 전국적으로 稅銀 감량을 지시함, 이에 따라 장주부 차원에서 동양과 서양 두 곳에서 들어온 물품의 총세액 27,087.633량에서 3,687.33량이 줄어들어 약 23,400량으로 총세액량이 줄어들었음
  - 『東西洋考』 권7 「餉稅考」 중 陸餉, “萬曆四十三年, 恩詔量減各處稅銀. 漳州府議, 東·西二洋稅額貳萬柒千捌拾柒兩陸錢叁分叁釐. 今應減銀參千陸百捌拾柒兩陸錢叁分叁釐, 尚應徵銀貳萬叁千肆百兩.”
- 이 조치에 따라 각 물품별 육향세율을 새롭게 명시하였음, 이에 대한 ‘貨物抽稅見行則例’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丁香은 100斤에 1錢 5分 5釐(0.155兩)의 稅銀이 부과되었음, 또한 丁香枝는 100斤에 1分 7釐(0.017兩)의 稅銀이 부과되었음
- 즉 정향은 약 0.025兩, 정향지는 0.003兩을 덜 받게 됨, 이는 처음 세액에 비하였을 때 각각 86.1%와 85%에 해당
- “만력17년 총세액(27,087.633) : 만력43년 총세액(23,400.303) = 0.86387...”인 것을 보면 정향과 정향지의 감축 비율은 총세액의 감축 비율과 비슷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정향은 정향지는 비해 9배 정도 비쌌음을 알 수 있음, 앞서 나온 丁香皮처럼 정향지 역시 효능상의 문제로 정향보다는 가치가 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어쨌든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정향은 중국 상인들을 통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중국 상인 특히 복건 상인의 활동이 15세기까지 활발하였던 유구국의 정향 조달을 방해했을까?

## (2) 17세기 몰루카를 둘러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싸움

- 만력 연간 몰루카 지역은 佛郎機와 紅毛 즉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東洋에서 정향의 유일한 산지 몰루카도 분열됨
- 『東西洋考』 권5 「東洋列國考」 중 美洛居, “美洛居, 俗訛爲米六合, 東海中稍蕃富之國也. … 先是, 佛郎機來攻, 國人狼籍請降, 赦其酋, 令守舊爲政于國, 歲輸丁香若干, 不設兵戍, 令彼國自爲守.”
- (道光)『廣東通志』 권330 「嶺蠻傳」 중 附外蕃, “萬曆時, 佛郎機來攻, 戰敗, 請降乃宥, 令復位, 歲以丁香充貢. 已而, 紅毛番橫海上, 知佛郎機兵已退, 乘虛, 直抵城下, 執其酋, 語之曰, 若善事我, 我爲若主, 殊勝佛郎機也. 不得已聽命. 佛郎機聞之大怒, 率兵來攻, 道爲華人所殺. 時紅毛番雖據美洛居, 率一二歲, 率衆返國. 既返復來, 佛郎機酋子既襲位, 欲竟父志, 大舉兵來襲. 值紅毛番已去, 遂破美洛居, 殺其酋, 立己所親信主之. 無何, 紅毛番至, 又逐佛郎機所立酋, 而立美洛居故王之子. 自是歲構兵人, 不堪命華人流寓者, 遊說兩國, 令各罷兵, 分國中萬老高山爲界, 山以北屬紅毛番, 南屬佛郎機, 始稍休息, 而美洛居竟爲兩國所分.”
-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 초에 동남아시아에 진출, 마카오에 등장한 것은 1520년대
- 네덜란드인들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등장, 이때부터 양자는 치열하게 싸웠을 것
- 이러한 싸움은 유럽에서 정향의 거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양자가 이를 독점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음
- 동시에 이는 동아시아에 정향의 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의미
- 그럼에도 유구국의 정향 조공은 계속 이어졌음

## IV. 청대 정향 조달의 변화

### (1) 강희 5년 유구국 조공 품목 축소

- 청초에 이르면 유구국의 조공품 중에 정향이 빠짐, 康熙帝는 유구의 토산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공을 금지하였음
- 『大清聖祖仁皇帝實錄』 卷19 康熙5년(1666) 7월 2일, “琉球國中山王尙質, 遣陪臣 英常春等朝貢, 并以前次貢舶漂失·補進金銀·器皿等物. 得旨, 尙質恭順可嘉, 所補進貢物, 俱令齎回. **至該國既稱瑪瑙·烏木等十件, 原非土產, 此後免貢.**”
- 이에 관한 강희제의 詔는 다음과 같음
- 道光『重纂福建通志』 권269 「雜錄4」, “五年, 遣使入貢, 奉旨, 琉球國所進瑪瑙·烏木·降香·木香·象牙·錫·束香·**丁香**·檀香·黃熟香等十件, 俱非本國土產, 免其入貢. 其硫黃, 著留福建督撫收貯, 其餘方物, 令督撫差人解送, 來使不必齎送來京, 卽給賞遣回.”
- (淸) 潘相 『琉球入學見聞錄』 권1, “(康熙)五年, 令貢非土山, 勿進(瑪瑙, 烏木, 降香, 木香, 象牙, 錫, **速丁香**, 檀香, 黃熟香, 皆免貢.), 貯硫黃於閩庫.”
- 제외 항목을 보면 향 종류가 가장 많으며 이때 정향도 빠짐, 이외에 오목, 석, 마노, 상아 등도 보임

**- 아마도 유구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을 통해 다시 중국으로 조달한 물품들을 면제한 것으로 보임**

- 강희5년 조처 중 '유황은 복건 관고에 저장하게 하다(貯硫黃於閩庫)'는 부분은 중앙에서 유구국의 조공품을 받지 않고 복건 지방 당국의 재정으로 추가시키겠다는 조처
- 『대명회전』 중 유구국 '공물' 하단 설명, “右象牙等物進收, 硫黃·蘇木·胡椒, 運送南京該庫. 馬就於福建發缺馬羸站走遞. 磨刀石, 發福建官庫收貯.”
- 이에 의하면, 명대에는 유구국 공물 가운데 상아는 북경의 황제가 직접 進收하였으나, 유황, 소목, 후추 등은 南京 관고로 운송되었음
- 당시 남경은 명의 留都이자 주로 장강 이남 지역 행정의 중심
- 그러나 강희5년 유황도 복건 관고로 운송하기로 결정한 것
- 즉 청 조정이 유구국 공물 가운데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복건 당국에 두었으며, 일부만이 조정으로 운송하였다는 것을 의미

**(2) 강희 19년·32년 유구국 조공 품목 축소**

- 강희19년(1680)에 한 차례 더 몇 가지 조공 물품에 대한 면제령을 내림
  - 道光『重纂福建通志』 권269 「雜錄4」, “十九年奉旨, 琉球國進貢方物, 以後止令貢硫黃, 海·螺殼, 紅銅, 其餘不必進貢.”
- 『琉球入學見聞錄』에는 강희20년(1681) 조처로 기록됨
  - (清) 潘相 『琉球入學見聞錄』 권1, “(康熙)二十年, 令琉球止貢硫黃, 紅銅, 海·螺殼, 餘貢免進.(金銀罐, 金銀粉匣, 金銀酒海, 泥金彩畫屏風, 泥金扇, 泥銀扇, 畫扇, 蕉布, 苧布, 紅花, 胡椒, 蘇木, 腰刀, 大刀, 鎗盔, 甲鞍, 絲綿, 螺盤, 俱免進.)”
- 이에 의하면 유황, 홍동, 海殼과 螺殼만을 유구는 조공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하지 않겠다고 말함
- 강희32년(1693)에 다시 해각과 라각 조공을 면제, 기본적으로 硫黃, 紅銅, 白剛錫만 조공하도록 조처
  - (清) 潘相 『琉球入學見聞錄』 권1, “三十二年, 免貢海·螺殼.(是後, 定常貢熟硫黃一萬二千六百斤, 紅銅三千斤, 白剛錫一千斤外, 有加貢, 無定額.)”
- 이때 금지된 유구국 조공품 내역을 『대명회전』의 그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음

『대명회전』 유구국 공물	강희5년 면제된 유구국 공물	강희20년 면제된 유구국 공물	강희32년 면제된 유구국 공물
馬			
刀		腰刀, 大刀	
金銀酒海		金銀罐, 金銀酒海	
金銀粉匣		金銀粉匣	
瑪瑙	瑪瑙		

象牙	象牙		
螺殼			螺殼
海巴			海殼
擢子扇		畫扇	
泥金扇		泥金扇, 泥銀扇	
生紅銅			
錫	錫		
生熟夏布		苧布, 蕉布	
牛皮			
降香	降香		
木香	木香		
速香	速香		
丁香	丁香		
檀香	檀香		
黃熟香	黃熟香		
蘇木		蘇木	
烏木	烏木		
胡椒		胡椒	
琉黃			
磨刀石			
		紅花, 泥金彩畫屏風, 鎗盔, 甲鞍, 絲綿, 螺盤	

- 『대명회전』에 실린 조공품명과 청대에 폐지된 조공품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강 연결시킬 수 있음
- 이중 馬, 牛皮, 磨刀石이 언제 폐지되었는지 알 수 없음
- 또한 紅花, 泥金彩畫屏風, 鎗盔, 甲鞍, 絲綿, 螺盤은 명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품인데 언제부터 유구국이 명 혹은 청에 조공하였는지 알 수 없음
- 주석[錫]은 강희5년 조공품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에 강희32년에 다시 白剛錫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음
- 남는 문제 : 청 조정은 정향을 필요치 않았을까? 유구에게 면제한 것이 유구를 가상히 여겼을까?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정향을 구하게 됨으로써 유구로부터 굳이 정향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유구에게는 '정향 조공 면제'라는 '은혜'를 내림으로써 하나의 정치 외교적 전략을 취한 것일까?

### (3) 새로운 정향 조달자로 등장한 네덜란드

- 청초 유구는 정향 조공이 면제되었지만, 다양한 나라들이 廣東을 통해 정향을 가져왔음
- 乾隆『廣東通志』에는 정향을 조공한 국명이 기재되어 있음
- 廣東을 통해서는 말라카[滿刺加國], 수마트라[蘇門答刺國], 네덜란드[荷蘭國] 등의 정향이 들어옴
- 특히 '紅毛'로 불렸던 네덜란드인들이 荷蘭國이라는 정식 국명으로 정향을 조공했다는 기록이 두드러짐

- 西洋國과 暹羅國은 한시적으로 가져옴
- '滿刺加'의 경우, 말라카해협 일대의 패권 다툼과 관련 있음
- 당시 말라카는 포르투갈의 영향력에 있었고 조호르 술탄국(1528~1855)은 이들과 연계를 맺으며 말라카해협 일대를 장악
- 17세기 수마트라섬 서북단의 아체(Aceh)가 성장하면서 조호르를 압도, 1620년대 전후로 조호르를 지배
- 조호르는 네덜란드인과 연합하여 아체를 내쫓고자 함, 1641년 조호르-네덜란드 연합군은 말라카 함락에 성공, 이후 아체는 네덜란드에 의해 압도당함
- 사실상 17세기 동남아시아산 정향은 네덜란드인들이 장악하였다고 봐도 됨

乾隆『廣東通志』 권58 「外番志」 중 滿刺加國, “厥貢, 番小廝·犀角·象牙·玳瑁鶴頂·鸚鵡·黑熊·白麋·鎖袱·金母鶴頂·金鑲戒指·撒哈喇·白苾布·薑黃·布撒都·細布·西洋布·花縵·片腦·梔子花·薔薇露·沈香·乳香·黃速香·金銀香·降眞香·紫檀香·丁香·烏木·蘇木·大楓子·番錫·番鹽.”

乾隆『廣東通志』 권58 「外番志」 중 蘇門答刺國, “多產香藥, 其風俗語音, 與大食同, 厥貢馬·犀·牛·龍涎香·撒哈喇梭·眼布·寶石·木香·丁香·降眞香·沈速香·胡椒·蘇木·錫·水晶·瑪瑙·番刀·番弓·石青·回回青·硫磺.”

乾隆『廣東通志』 권58 「外番志」 중 荷蘭國, “厥貢, 舊有銀盤·甲鞍·番花·桂花·被褥·毛纓·薔薇木·白石畫·小車白·小牛·胡椒·織金·緞·盛各樣油小箱·腰刀·羽緞·倭緞·布·琉璃燈·聚耀燭臺·琉璃盃·肉豆蔻·葡萄酒·象牙·皮帶·夾板樣船, 後俱免進. 惟貢, 馬·珊瑚·鏡·哆囉絨·織金·毯嗶吱緞·自鳴鐘·丁香·檀香·冰片·琥珀·烏鎗·火石, 貢物不詳, 多少數.”

乾隆『廣東通志』 권58 「外番志」 중 西洋國, “國朝康熙六年十月內, 遣使朝貢方物, … 進金葉表文一函, 國王像一幅, 全金金剛石飾金劍一持, 金琥珀書箱一座, 珊瑚樹一枝, 珊瑚珠一串, 琥珀珠六串, 伽楠香二段, 哆囉絨二疋, 象牙十枝, 犀角四座, 乳香六桶, 蘇合油一桶, 丁香一籠, 金銀乳香二籠, 花露一箱, 花幔四端, 花氈一鋪. 進獻皇后方物, 大玻璃鏡一面, 珊瑚珠一串, 琥珀珠四串, 花露一籠, 丁香一籠, 金銀乳香一籠, 花幔四端, 花氈一鋪.”

乾隆『廣東通志』 권58 「外番志」 중 暹羅國, “十六年十二月, 遣使朝貢, 齎金葉表文一道, 進皇上方物, 龍亭一座, 速香三百斤, 降眞香三百斤, 豆蔻三百斤, 安息香三百斤, 藤黃三百斤, 胡椒三百斤, 龍涎香一斤, 檀香一百斤, 上冰片一斤, 中冰片二斤, 薔薇露六十罐, 孔雀尾十屏, 樟腦一百斤, 孩兒茶皮一百斤, 硫磺一百斤, 紫梗一百斤, 象牙三百斤, 大楓子三百斤, 烏木三百斤, 紅木三十擔, 沈香二斤, 油片二十瓢, 犀角六座, 翠鳥毛六百張, 丁香皮一百斤, 椒花一百斤, 碗石一斤, 棧一百斤, 金頭白加紗六疋, 金頭紅加紗六

疋, 大紅西洋布十疋, 金頭白西洋布十疋, 花西洋布六疋, 襪天十疋, 小襪天六疋, 大花絨  
 氈二領, 謝恩禮物襪天六疋, 絨氈二領, 猴棗四枚, 伽楠香一斤半, 鑲珠水晶碗一個, 鑲珠  
 水晶盤一個, 鑲珠水晶罐一個, 花西洋布六疋, 鑲金烏鎗二門. 進皇后方物速香一百五十  
 斤, 安息香一百五十斤, 降真香一百五十斤, 象牙一百五十斤, 豆蔻一百五十斤, 大楓子  
 一百五十斤, 藤黃一百五十斤, 胡椒一百五十斤, 龍涎香半斤, 烏木一百五十斤, 紅木一  
 十五擔, 沈香一斤, 上冰片半斤, 中冰片一斤, 油片十瓢, 檀香五十斤, 薔薇露三十罐, 金  
 頭白加紗三疋, 金頭紅加紗三疋, 大紅西洋布五疋, 金頭白西洋布五疋, 花西洋布五疋,  
 襪天五疋, 小襪天三疋, 犀角三座, 孔雀尾五屏, 翠鳥毛三百張, 樟腦五十斤, 丁香皮五十  
 斤, 孩兒茶皮五十斤, 椒花五十斤, 硫磺五十斤, 碗石半斤, 紫梗五十斤, 棧五十斤.”

#### IV. 맺음말

- 16세기 이전 동아시아에서는 유구가 조공 형식을 통하여 정향을 명조에 제공
-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실록 내의 기록은 없음, 다른 문헌을 통하여 유구의 정향 조공 흔적을 더 찾아야 함
- 15세기까지 조선에 한시적으로 유구가 조달한 대량 정향이 들어왔다는 것을 통하여 유구의 정향 조공 실체 확인이 가능함
- 16세기 이후로는 복건 상인들이 정향을 구하였고 이에 복건 당국이 세금을 부과, 민간인이 정향 판매에 개입한 것으로 보임
- 또한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원산지 몰루카 등을 점령하면서 정향 공급을 독식하였으나, 17세기 초 네덜란드인들이 몰루카에 등장하면서 몰루카를 두고 전투를 벌임
- 유럽인의 몰루카 점령이 중국으로의 정향 조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아마도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로 운송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복건 상인들과의 경합도 있었으리라 추정됨,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7세기 중후반 청조는 토산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구의 정향 조공을 철폐, 사실상 유구의 정향 조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강희제는 순차적으로 유구국에게 다른 물품에 대한 조공을 철폐하게 함
- 대신에 정향은 네덜란드, 수마트라, 말라카가 중국으로의 정향 공급을 주도함, 이들은 조공 형태로 들어왔음
- 그러나 사실상 네덜란드가 수마트라와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면서 정향의 중국 공급을 주도하였을 것

【제5발표】

## 동유라시아 용연향의 생산과 유통

이완석(동국대)

---

I. 서론

II. 용연향 인식의 변천

1. 아말향에서 용연으로
2. 용연향 신화의 공고화

III. 용연향 수입과 소비

1. 용연향의 생산지
2. 향료 무역의 규모
3. 용연향의 소비 형태

IV. 결론



# 동유라시아 용연향의 생산 과 유통

- 중국의 용연향 인식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완석

## 목차

- I. 서론
- II. 용연향 인식의 변천
  - 1. 아말향에서 용연으로
  - 2. 용연향 신화의 공고화
- III. 용연향 수입과 소비
  - 1. 용연향의 생산지
  - 2. 향료 무역의 규모
  - 3. 용연향의 소비 형태
- IV. 결론

# I. 서론

- 龍涎香이란?

향유고래의 소화기에서 생성된 왁스와 같은 가연성 고형물  
향유고래는 모든 바다에 서식하나, 용연향의 주산지는 인도양  
용연향의 색이 회색, 흑색, 혹은 琥珀色이어서 아랍어로 anbar,  
즉 호박이라고 불림

이후 프랑스에서는 용연향을 ambre gris(회색의 호박)이라고 불렀고 영명인 ambergris는 여기에서 유래

- 중국에 처음 전래된 시기는 당대(唐代)로 추정

▷ 撥拔力國, 在西南海中, 不食五穀, 食肉而已. 常針牛畜脈, 取血和乳生食. 無衣服, 唯腰下用羊皮掩之. 其婦人潔白端正, 國人自掠賣與外國商人, 其價數倍. 土地唯有象牙及阿末香. 波斯商人欲入此國, 圍集數千, 人齋縶布, 沒老幼共刺血立誓, 乃市其物. 自古不屬外國. 戰用象排、野牛角為槊, 衣甲弓矢之器. 步兵二十萬. 大食頻討襲之. (唐 段成式, 『酉陽雜俎』 권4)

발발력국에서는 상아 및 阿末香이 나고 페르시아 상인이 이를 구매하였음. 아말향은 바로 anbar의 음차

이후 중국에서 용연향은 가장 귀중한 향료로 여겨짐 “諸香中龍涎最貴重.”(南宋 張世南, 『游宦紀聞』 권7) 동유라시아에서 생산된 용연향은 중국으로 유통되어 소비됨

## Ⅱ. 용연향 인식의 변천

### 1. 아말향에서 용연으로

- 용연의 原義 : 고대 중국에서 용연의 사용례

▷ 『幽冥錄』云: 洛下有一洞穴深不可測. 有一婦人欲殺夫, 謂夫曰, “未曾見此穴, 夫自送視之.” 至穴, 婦推夫墜穴, 至底, 婦擲飯物, 如欲祭之. 此人當時顛墜恍惚, 良久乃蘇, 得飯食之, 氣力稍強, 惆惶覓路, 乃得一穴. 匍匐從就, 崎嶇反側, 行數十里, 穴小寬, 亦有微明. 遂得寬平廣遠之地, 步行百餘里, 覺所踐如塵, 而聞糗米香, 啗之芬美, 過之于以充飢. 即裹以爲糧, 緣穴而行食. 此物既盡, 復遇如泥者, 味似向塵, 又齋以去. 所歷幽遠, 里數難測, 就明廣而食所齋盡, 便入一都. 郭郭修整, 宮館壯麗, 臺榭房宇, 悉以金玩爲飾, 雖無日月, 明踰三光. 人皆長三丈. ... 此人便復隨穴而行, 遂得出交郡. 往還六七年間, 即歸洛, 問(張)華, 以所得二物示之. 華云, “如塵者是黃河龍涎, 似泥是昆山下泥.” (南朝 梁 元帝, 『金樓子』 권5)

동굴 속 별천지에서 발견한 용연은 향과 맛이 좋아서 장기간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신비한 보물

▷ 一日大會韋氏之族於廣化裏, 玉饌俱列, 暑氣將甚, (同昌)公主命取澄水帛, 以水蘸之, 掛於南軒, 良久滿座皆思挾纒. 澄水帛長八九尺, 似布而細, 明薄可鑒, 云其中有龍涎, 故能消暑毒也. (唐 蘇鶚, 『杜陽雜編』 권하)

공주가 보유한 여러 보물 중 징수백 속 용연은 여름철의 심한 열기도 해소하는 신비한 보물

- 段成式(803~863)과 衛國文懿公主(849~870)는 대략 동시대 인물. 당 후기 아말향과 용연은 서로 다른 물질이었음

▷ 濂溪石. 宋周濂溪判合州時, 嘗與人對奕. 有一老人傍觀, 口吐涎, 香氣襲人. 公驚曰: “汝龍也. 何故來?” 此老人曰: “何以知之?” 公曰: “吾問, 龍涎極香. 汝口中所落者是也.” 湏臾大雨雷電, 老人化龍從溪而去. 公取方石二十四片, 鎮溪口. 今通曉橋是也. 『重慶志』(明 杜應芳, 『補續全蜀藝文志』 권54)

복숭 시기, 용연은 매우 향기롭다는 인식이 등장. 즉 송대부터 아말향을 대신하여 용연이란 변화된 명칭이 등장

▷ 龍涎香. 葉庭珪云: 龍涎出大食國. 其龍多蟠伏于洋中之大石, 臥而吐涎. 涎浮水面, 土人見林鳥翔集, 衆魚游泳爭嗜之, 則沒取焉. 然龍涎本無香, 其氣近于臊, 白如百藥煎而膩理. 黑者亞之如靈脂而光澤, 能發衆香故, 多用之以和香焉. 潛齋云: 其涎如膠, 每兩與金等. 舟人得之, 則巨富矣. 温子皮云: 眞龍涎, 燒之置杯水于其側, 則煙入水. 假者則散. 嘗試之有驗 (宋 陳敬, 『陳氏香譜』 권1)

▷ 「過子忽出新意以山芋作玉糝羹色香味皆奇絕天絕天上酥陀則不可知人間決無此味也」 香似龍涎仍醞白, 味如牛乳更全清. 莫將北海金齏鱠, 輕比東坡玉糝羹. <香譜. 龍涎於香品中最貴重, 出大食國海傍, 多亦不過數兩. 上品曰, 泛水, 次曰, 滲沙.> (南宋 蘇軾 撰, 施元之 注, 『施注蘇詩』 권40)

이역의 물품에 건조한 사실 대신 용의 신비로움을 결합시킴 → 명칭의 변화가 희구(希求)를 낳음. 가치 상승을 목적

## 2. 용연향 신화의 공고화

▷ 諸香中龍涎最貴重. 廣州市直每兩不下百千, 次等亦五六十千, 係蕃中禁權之物, 出大食國. 近海傍常有雲氣罩山間, 卽知有龍睡其下. 或半載, 或二三載, 土人更相守視, 俟雲散則知龍已去, 往觀必得龍涎, 或五七兩, 或十餘兩. 視所守人多寡, 均給之或不平, 更相讎殺. (南宋 張世南, 『游宦紀聞』 권7)

용의 생태와 연관시켜 대식국의 산에서도 용연의 발견된다고 여김

그러나 용연향의 발견 장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와 부합시키는 쪽으로 용연향 생산 신화를 정교화 해 나감

▷ 又一說, 大洋海中有渦旋處, 龍在下, 湧出其涎, 爲太陽所爍則成片, 爲風飄至岸, 人則取之納官. 予嘗叩泉廣合香人云: “龍涎入香, 能收斂腦麝氣, 雖經數十年, 香味仍在.” 嶺外雜記所載, 龍涎出大食西海, 多龍枕石一睡, 涎沫浮水積而能堅, 鮫人採之, 以爲至寶. 新者色白, 稍久則紫, 甚久則黑. (南宋 張世南, 『游宦紀聞』 권7)

바닷속에서 용연향이 용출된다는 정보는 『천일야화』 속 용연향이 용출하는 보물섬의 묘사와 유사. 즉 7세기경 아랍인의 관념이 그 근거로 보임

▷ 又一說云, 龍出沒於海上, 吐出涎沫, 有三品. 一曰汎水, 二曰滲沙, 三曰魚食. 汎水, 輕浮水面, 善水者伺龍出沒, 隨而取之. 滲沙, 乃被濤浪飄泊洲嶼, 凝積多年, 風雨浸淫, 氣味盡, 滲於沙土中. 魚食, 乃因龍吐涎, 魚競食之, 復化作糞, 散於沙磧, 其氣腥穢. 惟汎水者, 可入香用, 餘二者, 不堪. 曲江鄧灝, 以爲就三說較之, 後說頗是. 諸家之論不同, 未知孰當. 以愚見第一說稍近. (南宋 張世南, 『游宦紀聞』 권7)

용연향은 향유고래의 배설물로서 해변에서 발견되므로 이역으로부터 입수되는 생산 정보는 용과 관련 없음. 더 사실에 근접한 정보가 입수됨

그러나 용과 관련된 정보가 더 옳다고 여기는 현상이 등장.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 신비성을 믿어야만 해서 믿는 현상

▷ 龍涎嶼. 嶼方而平, 延袤荒野, 上如雲塢之盤, 絕無田產之利. 每值天清氣和, 風作浪湧, 羣龍游戲, 出沒海濱時, 吐涎沫于其嶼之上, 故以得名. 涎之色或黑于烏香, 或數于浮石, 聞之微有腥氣, 然用之合諸香, 則味尤清遠, 雖茄藍木、梅花腦、檀、麝、梔子花、沈速木、薔薇木眾香, 必待此以發之. 此地前代無人居之, 間有他番之人, 用完木鑿舟, 駕使以拾之, 轉鬻于他國, 貨用金銀之屬博之. (元 王大淵, 『島夷志略』)

용연향이 채취되는 장소와 시기를 구체화하여 용 실존의 사실성을 높임. 오히려 신비성을 더욱 공고히 함

▷ 大食勿拔国. ... 每歲, 嘗有大魚死, 飄近岸. 身長十餘丈, 高二丈餘. 国人不食, 但剗其膏爲油, 多者至二三百斤. 肋骨作屋, 桁脊骨作門扇, 骨節可爲臼. 又有龍涎, 全不知所出, 忽見成塊飄泊岸下, 地人競争貨買. (南宋 陳元靚, 『事林廣記』前集 권5)

그러나 이전 시기에 사실에 근접한 정보가 중국에 전해졌으나 일부에서만 수용되었음

▷ 海船駐札蘇門答刺, 差人船於其山, 採取硫黃, 貨用段帛磁器之屬. 其酋長感慕恩賜, 常貢方物. 龍涎嶼望之, 獨峙南巫里洋之中, 離蘇門答, 刺西去一晝夜程. 此嶼浮灩海面波激雲騰. 每至春間, 羣龍來集於上, 交戲而遺涎沫, 番人拏駕獨木舟, 登此嶼, 採取而歸. 或風波則人俱下海, 一手附舟, 旁一手揖水而得至岸. 其龍涎, 初若脂膠黑黃色, 頗有魚腥氣, 久則成大塊. 或大魚腹中, 刺出若斗大, 亦覺魚腥. 焚之清香可愛. 貨於蘇門答刺之市, 官秤一兩用彼國金錢十二箇. 一斤該金錢一百九十二箇, 准中國銅錢九千箇, 價亦非輕矣. (明 費信, 『星槎勝覽』 권3)

신화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지만, '대어'의 뱃속에서 용연향이 나온다는 정보가 기재됨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 『동방견문록』에서 인도양 스코트라 섬의 거주민이 고래 배 속에서 생성된 용연향을 발견하였고, 거주민들이 포경을 업으로 삼아 용연향을 획득한다고 기록. 또한 아덴으로 가는 모든 선박은 이 섬을 지나가며 용연향을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서술 → 이 지역의 상식

▷ 龍涎所出及形狀臭味, 『負喧雜錄』、葉廷圭『香譜』、曹昭『格古論』、『異域志』、『居家必用』、『瀛涯勝覽』, 皆載其說, 然並不若張世南『遊宦記聞』, 爲詳因備錄如左. “諸香中龍涎最貴 (중략)” 又『大明會典』, 古里國及蘇門答刺國, 永樂中, 皆貢龍涎也. (明 顧起元, 『說略』, 권30 蟲注下)

鄭和 항해를 수증한 馬歡의 『瀛涯勝覽』에서는 용연향 채취에 대해 사실적인 기술(“其龍涎香, 漁者常於溜處采得, 如水浸瀝靑之色, 嗅之無香, 火燒惟有腥氣, 其價高貴, 買者以銀對易, 海彼人采積如山, 罨爛其肉, 轉賣暹羅、榜葛刺等國, 當錢使用.”)을 함 → 그러나 『說略』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용연향의 신비성을 재확인 함

▷ 『遊宦紀聞』云, (중략) 或言, 涎沫有三品, 一曰汎水, 一曰滲沙, 一曰魚食, 汎水則輕浮水面, 善水者伺, 龍出隨取之. 滲沙, 則疑積多年, 氣味盡滲入沙中. 魚食, 則化糞, 散於沙磧. 惟汎水者, 可入香用. 又言, 魚食亦有二種, 海旁有花若水芙蓉, 春夏間盛開, 花落海, 大魚吞之, 若腹腸中先食龍涎, 花嚙入久, 即脹悶, 昂頭向石上吐沫, 乾枯可用, 惟糞者不佳. (明 郭棐, 『廣東通志』 권69 外志4)

용연과 꽃을 함께 섭취하면 사용할 수 있는 용연향이 생산된다고 주장 → 대어의 뱃속에서 발견되는 용연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遊宦紀聞』의 논리를 세분해서 정교화 함

## Ⅲ. 용연향의 수입과 소비

### 1. 용연향의 생산지

- 중국으로 수입되는 지역의 보물 중 많은 부분을 향료가 점유. 송대에 이르러 해상 교역로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향료가 대량으로 수입됨

▷ (開寶4年), 置市舶司於廣州, 後又於杭、明州置司. 凡大食、古邏、闍婆、占城、勃泥、麻逸、三佛齊諸蕃並通貨易, 以金銀、緡錢、鉛錫、雜色帛、瓷器, 市香藥、犀象、珊瑚、琥珀、珠琲、鑛鐵、鼈皮、瑇瑁、瑪瑙、車渠、水精、蕃布、烏楠、蘇木等物. (『宋史』 권186, 食貨志下8)

南宋 泉州市舶使 趙汝适의 『諸蕃誌』에서 56개 南海諸國의 풍토와 산물을 기록. 산물 중 90%가 향료

▷ 大食在泉之西北, 去泉州最遠, 番舶艱於直達, 自泉發船四十餘日至藍里. 博易住冬, 次年再發, 順風六十餘日, 方至其國. 本國所產, 多運載與三佛齊貿易, 賈轉販以至是中其國. ... 土地所出, 眞珠、象牙、犀角、乳香、龍涎、木香、丁香、肉豆寇、安息香、蘆薈、沒藥、血碣、... 等, 番商興販係就三佛齊佛、囉安等國轉易

層拔國在胡茶辣國南海島中, 西接大山, 其人民皆大食種落, 遵大食教度, 纏青番布, 躡紅皮鞋. 日食飯、麵、燒餅、羊肉. ... 產象牙、生金、龍涎、黃檀香. 每歲胡茶辣國及大食邊海等處, 發船販易.

弼琶囉國有四州餘皆村落, 各以豪強相尚事, 天不事佛. 土多駱駝、綿羊以駱駝肉并乳及燒餅爲常饌. 產龍涎、大象牙及大犀角. 象牙有重百餘斤, 犀角重十餘斤, 亦多木香、蘇合香油、沒藥、瑇瑁至厚, 他國悉就販焉.

中理國 ... 國有山與弼琶囉國隔界. 周圍四千里, 大半無人烟. 山出血碣、蘆薈, 水出瑇瑁、龍涎. 其龍涎不知所出, 忽見成塊, 或三五斤或十斤, 飄泊岸下. 土人競分之, 或船在海中驚見採得. (南宋 趙汝适, 『諸蕃誌』 권상)

송대 용연향의 생산지들과 국제 무역로가 기술됨

▷ 龍涎嶼. 獨然南立海此中嶼浮艷海面波擊雲騰. 每至春間, 羣龍來集于上, 交戲而遣涎. 番人乃駕獨木舟, 登嶼採取, 而設遇風波, 則人俱下海, 一手附舟傍, 而歸手揖水而至岸. 其龍涎, 初若脂膠黑黃色, 頗有魚腥之氣. 久則成在塊. 或大魚腹中, 剖出若斗大圓珠, 亦覺魚腥. 間焚之發清香可愛. 貨于蘇門之市, 價亦匪輕. (明, 陳仁錫, 『經世類纂』 권236, 邊類)

해상무역의 확대에 따라 명대에는 주로 용연서에서 채취하여 수마트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

▷ 溜山. 四面濱海如洲, 在西海中. ... 與龍涎嶼相近, 龍涎亦甚貴. 洪武、永樂、宣德間入貢.

錫蘭山國. 前代無攷. ... 及產龍涎、乳香 (明 陳仁錫, 『潛確居類書』 권13 區宇部8)

▷ 錫蘭山國. 其國自蘇門答刺, 順風十二晝夜, 可至. ... 地產寶石、眞珠、龍涎香、乳香

溜山洋國. 自錫蘭山別羅里南去, 順風七晝夜, 可至. ... 地產龍涎香. (明 費信, 『星槎勝覽』 권3)

▷ 榜葛刺國王賽弗丁, 遣使烏都蠻等, 貢犀角、龍涎香等物. (『明太祖實錄』)

▷ 溜山國. 自蘇門答刺國, 開舡過小帽山投西南行, 好風十日可到. ... 出龍涎香. 漁者溜中採得, 狀如浸瀝青, 嗅之不香, 火焚有魚腥氣, 價高以銀對易. ... 中國寶舡亦一二往彼, 收買龍涎香、椰子等物. (明 鞏珍, 『西洋番國志』)

인도양 제국에서 생산된 용연향을 수입. 혹은 직접 가서 구매

▷ 忽魯謨斯. 在西南海中. ... 永樂中朝貢, 地產珍珠、寶石、金箔、龍涎香. (明 陳仁錫, 『潛確居類書』 권13 區宇部8)

▷ 卜刺哇國. 自錫蘭山則羅南去, 二十一晝夜, 可至. ... 龍涎香. (明 費信, 『星槎勝覽』 권4)

祖法兒國, 竹步國, 木骨都東國, 卜刺哇國 등 아라비아반도와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용연향 생산되어 수입

▷ 建州女直 ... 珊瑚枝、血竭、龍涎、蘓合油、大玻瓈瓶 ... (明 陳仁錫, 『潛確居類書』 권13 區宇部9)

특이하게도 建州女直에서 용연이 생산된다는 기사도 있음

▷ 日本 ... 龍涎香及海參鯁魚之屬, 皆海中產所. (清 嵇璜, 『欽定皇朝通典』 권97, 邊防1)

청대에는 일본 역시 용연향 산지로 기록됨

1615년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의 리처드 위감, 류큐에서 매우 흰 용연향을 생산하고 있다는 서한. 이 용연향은 류큐 왕부에 모여진 후 다시 사쓰마[薩摩] 번으로 보내짐. 류큐 왕부는 법령으로 야에야마[八重山]의 용연향[鯨糞] 중 흰 것은 1근에 쌀 5석, 검은 것은 1근에 쌀 5 말로 계산되어 본국(사쓰마)로 건낼 것을 지시. 이렇게 모인 용연향은 히라도[平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매매

## 2. 향료 무역의 규모

▷ 福建市舶司常到諸國舶船. 大食、嘉合麻辣新條甘杯三佛齊國則有眞珠、象牙、犀角、腦子、乳香、沉香、煎香、珊瑚、琉璃、瑪瑙、玳瑁、龜筒、梔子香、薔薇水、龍涎等 (南宋, 趙彥衛, 『雲麓漫鈔』 권 5)

▷ 海南占城西平泉廣州船 不分綱首雜事稍工貼客水手例以一分抽一分般販鐵船二十五分抽一分

細色

麝香 箋香

沈香 丁香

檀香 山西香

龍涎香 降眞香

茴香 沒藥

胡椒 檳榔

▷ 外化蕃船 遇到申上司候指揮抽解

細色

銀子、鬼谷珠、珠砂、珊瑚、琥珀、玳瑁、象牙、沈香、箋香、丁香、龍涎香 (南宋 胡槩, 『四明志』 권 6, 郡志6)

▷ 太平興國初, 京師置榷易院, 乃詔諸蕃國香藥寶貨至廣州、交趾、泉州、兩浙, 非出於官者庫者, 不得私相市易. (清 徐松, 『宋會要輯稿』 職官44·市舶司)

▷ 香藥局, 掌管龍涎、沈腦、清和、清福、異香、香壘、香爐、香球、裝香簇爐細灰, 效事聽候換香, 酒後索喚異品醒酒湯藥餅兒. (宋 吳自牧, 『夢梁錄』 권19, 四司六局筵會假貨)

송대 복건, 광동 등지의 항구에서 용연향을 수입. 국가에서 매매 관리, 어용으로 공급

▷ 僕見一海賈鬻眞龍涎香二錢, 云: “三十萬緡可售鬻.” 時, 明節皇后許酬以二十萬緡, 不售. 遂命開封府驗其眞贋, 吏問何以爲別賈, 曰: “浮于水則魚集, 熏衣則香不竭.” 果如所言. (宋, 張知甫, 『張氏可書』)

하지만 외국 상인에 의한 사무역도 이뤄진 것으로 보임

1974년 8월, 중국 취안저우[泉州] 바다에서 송대의 배가 발견되었는데, 이 배는 遠洋에서 귀환한 중국 海船으로 송 말기인 1277년경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량의 향료를 적재하고 있었다. 4,700근에 달하는 향료와 약재 중에서 용연향 또한 발견되었으며 시험 결과 그 순도가 매우 높았음

▷ 旨給與者不為例

凡番貨價值弘治間定回回并番使人等進貢寶石等項

內府估驗定價例, 赤金每兩直鈔五十貫 ... 龍涎每兩三貫, 蘇合油每斤三貫, 乳香每斤五貫, 暹羅四十貫, 沈香每斤三貫, 速香每斤二貫, 丁香每斤一貫, 木香每斤三貫, 金銀香每斤五百文, 降真香每斤五百文, 暹羅十貫, 黃熟香每斤一貫, 暹羅十貫, 安息香每斤五百文 ... (明申時行, 『大明會典』 권113, 禮部71)

명대에도 관에서의 구입 가격이 정해져 있음. 다른 향료에 비해 월등히 고가

이러한 관방 무역 외에도 민간 무역 또한 활발. 嘉靖元年 市舶司太監 牛榮 등이 밀매입한 蘇木 399,589근, 후추 11,745근, 乳香, 白蠟 등이 은 3만여 냥의 가치

### 3. 용연향의 소비 형태

• 어용품 : 황제의 상징인 용과 연결

▷ 奉宸庫者, 祖宗之珍藏也. 政和四年, 太上始自攬權綱, 不欲付諸臣下, 因踵藝祖故事, 檢察內諸司. 於是乘輿御馬而從以杖直手焉. 大內中諸司局大駭懼. 凡數日而止. 因是併奉宸俱入內藏庫時, 於奉宸中得龍涎香、二琉璃缶、玻瓈母、二大筐玻瓈母者. 若今之鐵滓然, 塊大小猶兒拳, 人莫知其方. 又歲久無籍且不知其所從來. 或云, 柴世宗顯德間, 大食所貢. 又謂, 真廟朝物也. ... 香則多分賜大臣近侍, 其模製甚大而質古, 外視不大佳. 每以一豆火爇之, 輒作異花氣芬郁滿座, 終日略不歇. 於是太上大奇之, 命籍被賜者隨數多寡復收, 取以歸中禁, 因號曰古龍涎, 為貴也. 諸大璫爭取一餅, 可直百緡. 金玉穴而以青絲貫之, 佩於頸. 時於衣領間摩挲以相示, 坐此遂作佩香焉. 今佩香因古龍涎始也. (宋 蔡絛, 『鐵圍山叢譚』 권5)

▷ 層琳藉璣組, 方鼎炷龍涎. 瑪瑙供盤大, 玻璃琢琖圓. 暖金傾小榼, 屑玉釀新泉. 帝子天才異, 英姿棣萼聯. (宋 王明清, 『揮塵後錄』 권4)

▷ 其宣、政盛時, 宮中以河陽花蠟燭無香爲恨, 遂用龍涎、沈腦屑灌蠟燭, 列兩行數百枝, 焰明而香滃, 鈞天之所無也. (宋 葉紹翁, 『四朝見聞錄』 乙集)

송대부터 황제 어용으로 사용됨. 향 자체로 이용된 것 외에도  
龍涎燭으로도 이용

▷ 大明, 寢殿西制度如文思, 皆以紫檀香木爲之, 鏤花龍涎香間白玉飾壁. (清 顧炎武, 『歷代帝王宅京記』 권19)

명대에는 전각의 건축 자재로도 사용됨

• 사여품 : 위신재로서 황제와 신하의 관계를 돈독히 함

▷ 昨李端至聞, 苦足疾, 想無大害, 勿藥無吝忠告. 沉香酒十瓶、龍涎香三十兩、盾琴一張, 用賜卿意厚矣. (宋 胡銓, 『胡澹庵先生文集』 御札)

▷ 聞奏準苑使李忠輔傳奉

聖旨

行宮修葺頗夥, 賜臣一千兩銀、金香合一具、龍涎香一百餅、纈羅二十疋、揀芽小龍茶四斤、清馥香三十帖 (宋 馬光祖, 『建康志』 권1, 留都錄1)

▷ 十二月大雪苦寒遣賜器物傳宣撫問兼賜御札

戰鞍繡鞍各一對、龍涎香一千餅、龍茶一合、靈寶丹一合、鐵筒一對, 賜卿至可領也. (宋 謝起巖, 『忠文王紀事實錄』 권1)

▷ 今賜卿, 金二十兩注盃一副、金十五兩盤盞一副、細色二十匹、纈羅二十匹、龍涎香三十餅、度金香合一具十兩、清馥香三十帖、龍茶十斤, 至可領也. (宋 文天祥, 『文山先生全集』 권17)

악비와 문천상 등 공신들에게 용연향을 하사. 용연향이 지닌 상징성이 큰 작용

• 사치에 대한 신료들의 반발

▷ 己酉, 張浚言: “大食獻珠玉, 已至熙州” 詔津遣赴行在. 右正言呂祉言: “所獻眞珠、犀牙、乳香、龍涎、珊瑚、梔子、玻璃, 非服食器用之物, 不當受.” 上諭大臣曰 “捐數十萬緡, 易無用珠玉, 曷若愛惜, 其財以養戰士.” 遂命宣撫司無得受, 仍加賜遣之. (宋 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錄』 권32, 建炎4년 3월)

▷ 論大食故臨國進奉劄子

本部準尚書省劄子節文, 據廣南市舶司奏, 近據大食故臨國進奉人使蒲亞里等狀, 申奉本國蕃首遣齎表章、眞珠、犀牙、乳香、龍涎、珊瑚、梔子、玻璃等物, 前來進奉七月十六日. 三省樞密院奉聖旨眞珠等物, 令市舶司估價回答. 其龍涎、珊瑚、梔子、玻璃, 津發赴行在. 劄付本部施行. 臣契勘, 自來舶客, 利于分受回劄誘致, 蕃商冒稱蕃長姓名前來進奉朝廷. 止憑人使所持表奏, 無從驗實. 又其所貢多無用之物. 賜答之費, 數倍所得. 臣竊以謂, 方朝廷汲汲于自治之時, 而又陛下躬履儉素. 珍奇之物, 亦復保用所有. 今來大食故臨國進奉, 伏望聖慈令廣州諭旨卻之, 以示聖明不寶遠物, 以格遠人之意. 兼免財用之侵蠹, 道路之勞費, 仍乞自今諸國似此稱貢者, 並令帥司諭遣, 庶幾漸省無益之事, 取進止. (16卷, (宋) 張守, 『毗陵集』 권2)

황제의 용연향 구입을 장기적으로 금하려고 시도

• 용의 신비성과 황제와의 관계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서도 용연향에 대한 수요가 커짐

▷ 古龍涎香

占蠟沈十兩, 拂手香三兩, 金顏香三兩

蕃梔子二兩, 梅花腦一兩半, 龍涎二兩.

爲細末, 入射香二兩, 煉蜜和勻, 捻餅子蒸之.

▷ 亞里木吃蘭脾龍涎香

蠟沈二兩 薔薇水浸一宿 研如泥, 龍腦二錢研

龍涎香半錢.

爲末入沈香泥捻餅子窰乾蒸歌曰四兩玄參二兩松麝香半分蜜和同丸如芡子金鑪蒸還似千花噴曉風又清室香但減玄參三兩

▷ 出塵香

沈香四兩, 金顏香四錢, 檀香三錢

龍涎二錢, 龍腦一錢, 麝半錢.

先以白芨煎水, 搗沈香萬杵, 別研餘品, 同拌令勻入煎成. (宋 陳敬, 『陳氏香譜』 권2)

용연향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습향하여 사용(고유한 향이 없고 향기를 모아주는 기능이 있다 고 봄)

▷ 龍涎香

沈香十兩，檀香三兩，金顏香 龍腦各二兩

爲細末阜子膠脫作餅子尤宜作帶香

▷ 龍涎香

紫檀一兩半 建茶浸三日銀器中炒紫色碎者旋取之，箋香三錢半 剉細入蜜一盞酒半盞沙盒蒸取焙乾，甲香半兩漿水泥一塊同浸三日再漿水一盞煮乾以酒一盞煮乾銀器內炒黃，龍腦二錢別研玄參半兩切片入燄硝一分蜜各一盞煮乾炒不得犯鐵器，麝香二錢富門子另器研

細末以甘草半兩搥碎沸湯一升浸候取出甘草不用白蜜半斤煎去浮蠟與甘草湯同熬放入香末次入腦射及杉樹油節炭二兩和勻作餅子磁器內窰一月

▷ 內府龍涎香

沈香檀，香乳香，丁香，甘松，零陵，丁香皮，白芷各等分，藿香二斤，零陵二斤，玄參二斤淨。

爲蠟末煉蜜和勻焚如常溼香

▷ 王將明太宰龍涎香

金顏香一兩細如面，石紙一兩爲末嶺西出者食之口澀生津者是，沈檀各一兩半水研磨細角乾再研，龍腦半錢生，麝香半錢絕好。

用阜子膏和入模子脫花樣陰乾蒸之。

▷ 楊吉老龍涎香

沈香一兩，紫檀半兩，甘松一分淨，龍射。

先以沈檀爲細末甘松別研腦麝研細入甘松內三味再同研分作三分將一分半入沈香末中和勻入磁瓶密封窰一宿又以一分用白蜜一兩半重湯煮乾至一半放冷入藥亦窰一宿留半分至調合時摻入搜勻更入蘇合油薔薇水龍涎別研再搜爲餅子或搜勻入磁盒內掘地防深三尺餘窰一月取作餅子若更少入甲香尤清絕 (宋 陳敬, 『陳氏香譜』 권2)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인공 용연향이 등장. 용연/용연향이 자연산과 인공물을 모두 가리키는 의미가 됨.

▷ 論南中花卉

南中花木有北地所無者，茉莉花、含笑花、閣提花、鷹爪花之類。... 製龍涎香者，無素馨花多以茉莉代之。鄭德素侍其父將漕廣中，能言廣中事，謂：“素馨，惟蕃巷種者尤香也，恐亦別有法耳。龍涎，以得番巷花爲正云。” (宋 陳善, 『捫蝨新話』上集 권4)

▷ 素馨花

嶺外素馨花，本名耶悉茗花。叢脞么麼似不足貴，唯花潔白，南人極重之。以白而香故，易其名。婦人多以竹籤子穿之像。生物置佛前供養，又取乾花浸水，洗面滋其香耳。海外耶悉茗油，時於舶上得之，番酋多以塗身。今之龍涎香，悉以耶悉茗油爲主也。(宋 吳曾, 『能改齋漫錄』 권15, 方物)

중국 남방에서 이국의 산물로써 용연향 제조가 성행. 최종적으로는 용연향이 아닌 것이 용연향이라고까지 여겨짐

▷ 許道壽

許道壽者, 本建康道士, 後還爲民, 居臨安太廟前. 以鬻香爲業, 做廣州造龍涎諸香, 雖沉麝箋檀, 亦大半作偽. 其母寡居久, 忽如妊娠, 一產二物, 身成小兒形, 而頭一爲貓, 一爲鴉. 惡而殺之. 數日間, 母子皆死, 時隆興元年 (宋 洪邁, 『夷堅志』丁志 권9)

그러나 질이 낮은 인공 용연향은 꺼리게 됨

▷ 眞龍涎, 燒之, 置杯水于其側, 則煙入水. 假者則散. 嘗試之有驗 (『진씨향보』 권2)

▷ 眞龍涎, 焚之則翠煙浮空, 結而不散 (『유환기문』 권7)

▷ 眞龍涎, 焚之一縷, 翠烟浮空, 結而不散 (『제번지』 권하)

▷ 眞龍涎, 焚之一銖, 翠煙浮空, 結而不散 (宋 周去非, 『嶺外代答』 권7)

진위 감별법이 등장

▷ 水族香品有二, 曰龍涎, 曰甲香. 龍涎中國絕無產者, 甲香則福建之漳州, 浙江之台州, 廣東之韶州惠州廉州, 皆有之, 亦製. (清 王欣, 『青煙錄』 권3, 香考據)

▷ 余兩至粵, 未見眞龍涎, 姑述所聞如此. 今海外進貢內府, 不過四兩. (清 吳震方, 『嶺南雜記』 권하)

청대까지도 용연향은 극소량만 수입되었기에 중국에서 획득하기 쉽지 않았음

• 명대 황제들의 용연향 수요 : 용의 신통력에 대한 기대

▷ 初, 帝命戶部, 市龍涎香, 尚書梁材奏行各撫按官訪買, 日久未得, 帝趣之, 尚書孫應奎上言, 近已遣官賫檄, 守趣撫按各官, 勒期市進如, 仍怠緩者. 臣等指名參究. 帝曰, 梁材欺怠, 不以朝廷之用, 為急存無上心, 豈人臣耶? 即令多方買進.

復諭戶部市龍涎香數歲, 如何不為奏進. 尚書孫應奎上言, 已嚴行各撫官訪買, 遣官十五人勒期催取矣. 數歲不至, 不勝驚惕. 帝曰此物民間俱有, 但因部內求覓, 不肯將出耳. (明 范守己, 『肅皇外史』 권31)

▷ 王杲字景初 ... 會有詔買龍涎香, 久而未獲, 忌者因以中之, 逮下詔獄, 謫戍雷州, 卒於貶所. (明 過庭訓, 『本朝分省人物考』 권95, 王杲傳)

▷ 八月, 上以聖節建醮, 急得龍涎香, 而宮災時有私收得者, 戶部尚書高耀密購以進上, 大悅, 命倍給其直, 加耀太子少保 (明 何喬遠, 『名山藏』 권228, 典謨記)

용연향에 延年益壽의 효과가 있다고 믿고 方術의 재료로서 구매. 구매 여부에 따라 폄직과 승진까지 이뤄짐

▷ 嘉靖三十四年三月, 司禮監傳諭戶部, 取龍涎香一百斤, 遍市京師不得, 下諸藩司採買. 八月部文馳至臺司集議懸價每斤銀一千二百兩. 浮梁縣商汪弘請同網紀何處德, 往澳訪買, 僅得十一兩以歸. 十月遣千戶朱世威馳進內, 驗不同姑存之亟取真者部文再至. 時, 廣州獄, 斬罪夷囚馬那別的貯有一兩三錢, 上之黑褐色. 密地都密地山夷人繼上六兩褐白色, 細問狀皆云: 褐黑色者, 採在水, 褐白色者, 採在山, 皆真不贗. 而密地山商周鳴和等, 再上通前共得十七兩二錢五分. 次年八月, 馳千戶張鸞入進內, 辨論是真留用. 萬曆二十一年十二月, 太監孫順爲備東宮, 出講題買五斤, 司劄驗香, 把總蔣俊訪買於二十四年正月初九日進內十六兩. 差廣州照磨王應龍再取又於二十六年十二月初五日買進四十八兩五錢一分. 差南海王薄徐一中又再於二十八年八月十八日買進九十七兩六錢二分. 差本司經歷懷獻章. 自嘉靖至今, 夷舶聞上供稍稍以龍涎來市民間罪有售者始定買解事例每香一兩價一百金, 然得此甚難 (明 郭棐, 『廣東通志』 권69, 外志4)

가정제와 만력제 시기에 극심했음

▷ 龍涎. 機曰: 龍吐涎沫, 可制香. 時珍曰: 龍涎, 方藥鮮用, 惟入諸香. 云: 能收腦麝, 數十年不散. (明 李時珍, 『本草綱目』 권43, 鱗部)

龍骨, 龍腦 등 용 일부를 약재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용연은 실제 약재로는 사용하지 않음

▷ 解鴉片煙藥酒秘方

全歸五錢, 熟地四錢, 白芍四錢, 川芎二錢, 洋參四錢用福圓肉數錢煎湯浸晒三次爲妙, 白朮二錢炒, 兔絲餅四錢, 杜仲四錢塩水炒去絲, 炙芪四錢, 京桂四錢淨去粗皮, 甘枸杞四錢, 炙草二錢, 棋南香二錢研末, 龍涎香三錢要眞者如無用川貝母代之, 鹿茸末四錢炙好, 真虎骨四錢酥炙杵碎, 鴉片膏三錢.

以上諸藥用紗袋裝好放酒罈中取上好高粱燒酒六斤浸此藥封固安鍋中隔水蒸一炷香久取起待用

每飲此酒一小杯再取白酒一小杯和服如再飲須再和白酒一小杯酒完可以斷根如藥太重則加入燒酒三斤亦可 (清 齊學裘, 『見聞隨筆』 권25)

19세기 아편 해독약방에서 용연향을 사용하는 정도. 약재보다는 향료로만 취급

## IV. 결론

- 용연향의 수입 시작은 평범한 향료 중의 하나에 불과
- 용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며 신비한 공능을 지닌 향료로 인식
- 용이 황제의 상징이기에 어용으로 사용되면서 신료 및 일반 백성 사이에도 용연향을 선망
- 용연향의 생산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는 정보가 입수되어도 용 관련성은 폐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화를 더욱 정교화, 공고화 함
- 신화가 수요를 낳고, 수요가 다시 신화를 낳는 순환이 중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일어났음. 즉 이러한 요구 때문에 용연향은 '용연' 이어야 했음

【제6발표】

## 조선시대 교(膠)의 수급과 소비

김병모(동국대)

- 
- I. 서론
  - II. 녹각교의 소비처
  - III. 아교의 소비처
  - IV. 어교의 소비처
  - V. 결론



## 조선시대 교의 소비-소비처를 중심으로

김병모(동국대 HK연구교수)

- I. 서론
- II. 녹각교의 소비처
- III. 아교의 소비처
- IV. 어교의 소비처
- V. 결론

### I. 서론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되는 교의 종류는 15가지 정도이다. 아교, 어교, 녹각교, 명교, 연어피교, 금황교, 난교, 여피교, 오교, 황교, 봉취교, 어타, 우피교 등은 명칭이 확인되는 경우이고, 마피교, 석수어교, 은어교, 민어교 등은 명칭은 확인되지 않지만 실제 생산된 사례를 살필 수 있는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 공물로 분정된 것은 녹각교, 아교, 어교 등이며, 녹각교와 아교는 약재로, 어교는 도 단위 총론에서는 궤공으로, 군현 단위에서는 토공품으로 분류되었다. 즉 녹각교와 아교의 경우 공물 분정 분류 과정에서 이미 약재로서의 쓰임을 구체화했다. 이에 비해 어교는 그 용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사실 녹각교와 아교의 경우 약재로서만 소비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재로 분류한 것은 편의상의 방편에 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평안도 도 총론 약재 항목에 제시된 것으로 그러한 분류 관점을 살피게 한다.

“무릇 한 물건인데도 전부(田賦)에 거듭 나오고, 토공(土貢)이나 약재(藥材) 같은 것도 자못 많으므로, 이제 그 중요한 것을 좇아서, 꿀[蜂蜜]·밀[黃蠟] 따위 같은 것은 다만 토공에 적고 인삼·오미자 따위는 다만 약재에만 적어서 다시 거듭 나오게 하지 아니하였다.”<sup>1)</sup>

즉 공물 품목에 대한 중복 분류를 피하기 위해 중요하게 소비된 경우에 기초하여 한가지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녹각교와 아교의 경우 이들이 약재 이외의 용도로 소비된 경우가 있지만 약재로 소비된 경우가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약재로 분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녹각교와 아교의 경우 왕실 약재로 소비된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경우를 중요한 쓰임의 사례로 간주

1) 『세종실록』 지리지(154권), 평안도, “已上藥材, 隨各邑風土所宜, 使醫員種養, 元非山野所產, 皆不錄云。 凡一物而疊出於田賦, 若土貢若藥材者頗多, 今從其重者若蜂蜜、黃蠟之類, 只書于土貢; 人蔘、五味子之類, 只書于藥材, 不復重出云。”

했던 것 같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반영된 공물 분정의 분류 체계를 통해서 각 교의 소비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전개된 교의 소비처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

교는 약재와 같이 최종 상품으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접착제와 같이 중간재적 위치에서 소비되는 물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처가 상당히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채색이나 각공 등 특정 분야에 소비된 교의 종류 및 물리적 특성 등에 관심을 두었을 뿐 중간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된 교의 소비처에 관한 검토를 일목요연하게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질을 파악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소비량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비처에 관한 연구를 우선 진행시키고자 한다.

## II. 녹각교의 소비처

### 1. 약재

녹각교의 경우 각종 관찬서 및 사찬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비처는 약재로서의 쓰임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특히 『승정원일기』에 그러한 기록이 집약 출현한다. 당시 녹각교의 실제 소비 양상이 약재 위주로 전개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동의보감』은 녹각교의 처방으로 보혈(피 생성), 익정(정기 증진), 요통(허리 통증), 음저



도1. 황갈색 혹은 적갈색에 광택성과 반투명성을 지닌 녹각교.

(살속 깊이 고름이 생겨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종기), 활정(성교와 관계없이 무의식적 사정), 양위(발기 부전), 대하(여성 생식기의 분비물 분비), 봉루(자궁출혈), 토혈(피를 토함), 객혈(피 섞인 가래), 자양(영양 보충), 지통(통증을 멈춤), 만성질환에 의한 이수(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함), 하반신의 무력감, 비출혈(코피), 부정성기출혈, 혈뇨 및 재생불량성빈혈 등 상당히 다양한 질병을 제시했다. 따라서 약재로서의 녹각교

의 쓰임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녹각교의 약리적 효능 역시 비록 녹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녹각보다는 우수했다.

약재로서 녹각교의 구체적 소비 사례는 왕실 처방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興政堂에 李頤命 등이 입시하여 숙종의 脚胻 질환과 관련된 처방을 논의하는 내용 가운데 약재로서의 녹각교의 용례를 살필 수 있고<sup>2)</sup>, 전라도에서 내의원에 녹각교

2) 『承政院日記』 463冊(달초본 25책), 肅宗 37年 10月 8日 癸亥條, “上曰, 此丸藥製進, 可也. 頤命曰, 在外時, 問于本院, 則材料中鹿角膠, 陳久不堪用, 今方新劑若干, 且爲移關於所産處, 而今明日內, 似難劑入矣. 上曰, 依爲之.”

와 녹각상 등을 진상한 기록<sup>3)</sup>, 그리고 1885년 전라도 관찰사 尹榮信이 약재진상 명목으로 녹각교와 녹각상 등을 승정원에 보낸 啓文 등을 통해서도 약재로서의 녹각교의 쓰임을 살필 수 있다.<sup>4)</sup> 특히 녹각교의 경우 녹각, 녹용 등 귀한 약재와 함께 나란히 분류, 기록되기 때문에 약재로서의 취급 및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다. 약재로서 녹각교는 국제 교역품으로서도 충분한 상품 가치가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 사례이기는 하지만 문종 33년(1079)에 고려의 요청으로 송에서 보낸 약재 물목 가운데 몰약 등과 더불어 녹각교를 포함했다.<sup>5)</sup> 소변출혈에 사용된 녹각교의 구체적 처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녹각교 40g을 볶아서 구슬처럼 둥글게 튀기고, 몰약(沒藥)·유발회(油髮灰) 각 23g을 가루로 만든 후 소량의 풀을 더한 백모근즙(白茅根汁)에 이들을 섞어 오자대(梧子大)의 크기로 환(丸)을 빚어 공복에 소금물로 70환씩 삼키면 방사노상(房事勞傷)이나 소변출혈에 효과가 있다.”<sup>6)</sup>

## 2. 왕실 명정과 재궁 등의 금분 및 채색 장식

녹각교의 경우 약재로서의 쓰임에 비해 접착제로서의 쓰임은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다. 교 관련 내용을 비교적 적극 반영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각종 『의궤』, 『六典條例』, 『國朝喪禮補』, 『國朝五禮通編』 등의 관찬서와 『본초강목』, 『천공개물』, 『향약구급방』, 『동의보감』, 『자산어보』, 『오주서종박물고』 등의 사찬서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승정원일기』와 『국조오례보편』 등에 한정하여 몇몇 사례를 확인시키는 정도이다.

접착제로서 녹각교의 경우 왕실 상례와 관련하여 특별한 곳에 한정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왕의 명정과 재궁 등에 금분으로 글씨를 쓰거나 대령 과정에서 관 표면에 분채 장식을 할 때<sup>8)</sup> 특별히 내의원에 있는 녹각교를 가져다 사용했다. 최상품의 약재를 접착제로 선택, 사용한 것이다. 녹각교의 특별한 접착 능력 때문에 이러한 선택적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왕의 명정과 재궁, 왕의 관, 금분, 최상급 녹각교 등의 키워드에 주목한다면 접착제로서 녹각교의 독특한 소비 양상을 간과할 수 없다. 세조 영정의 면부에 사용할 교의

3) 『六典條例』 卷之六, 禮典, 內醫院, 各道進上, “全羅道……大黃二斤八兩, 鹿角霜二斤, 熟玄蓼一斤, 鹿角膠三斤, 鬱金八兩, 柿霜二斤…”

4) 『各司謄錄』 18, 湖南啓錄 4, 光緒24年(1885) 11月 15日, “全羅道所封, 去十月令藥材進上……鹿角霜貳斤, 鹿角膠貳斤. 乙酉別卜定鹿角膠壹斤.”

5) 『고려사』 권9, 文宗(文宗) 33年 7월, “廣州沒藥, 代州鹿角膠, 原州甘草…”

6) 『동의보감』.

7) 『國朝喪禮補編』 銘旌, “녹각교는 금을 섞는데 사용한다. 내의원에서 진배한다(鹿角膠所以和金者(內醫院).”; 『國朝喪禮補編』 梓宮書上字義, “녹각교는 금을 섞는데 사용한다. 내의원에서 진배한다(鹿角膠所以和金者(內醫院).”

8) 『國朝喪禮補編』 大斂, “관의(棺衣) 홍광직(紅廣織)을 사용한다. 분채(粉彩)는 도끼 모양 무늬[黼]를 그리는 것이다. 상의원에서 진배한다. 녹각교(鹿角膠)는 분채를 타는 것이다. 내의원에서 진배한다.”

종류를 논의하면서 영조가 김취노에게 던진 “아교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녹각교를 사용하는가”라는 질의 역시 접착제로서 녹각교에 대한 취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up>9)</sup> 녹각교의 경우 우교 등에 비해 다량의 생산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고급 약재로서 고가에 해당했음을 고려한다면 일반인, 혹은 범용의 접착용 소비에 적극 사용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Ⅲ. 아교의 소비처

#### 1. 약재

아교 역시 약재로서 광범위한 소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약재로 쓰일 때 阿膠煎藥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계량 단위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斤이 아니라 盒(盒)을 사용했다.<sup>10)</sup> 뿐만 아니라 약재로 쓰일 때는 ‘阿膠珠’, 즉 구슬 형태로 제조, 사용했다.<sup>11)</sup> 약재로 쓰이는 최상품 아교의 경우 구슬 모양으로 제조하여 차별화했거나 조제의 편의성을 도모했을 수 있다.<sup>12)</sup>

오늘날 아교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는 폐(肺), 간(肝), 콩팥(腎)에 작용하여 주로 보혈, 즉 적혈구를 증강시키고 전신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sup>13)</sup> 하지만 『동의보감』은 폐와 대장의 치료에 주로 처방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승정원일기』에는 폐를 다스리는 寧肺湯의 약재로 川芎, 當歸, 熟地黃, 五味子 등과 함께 아교를 자주 처방했다.<sup>14)</sup> 주로 불안,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처방약으로 잘 알려진 ‘黃連阿膠湯’ 역시 아교를 위주로 한 경우였다.<sup>15)</sup> 이외에 ‘八物湯元方’의 처방전에도 天門冬, 桑寄生 등의 약재와 함께 아교를 포함했다.<sup>16)</sup> 아교의 경우 국제 교역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9) 『承政院日記』, 영조 11년 을묘, ”상이 이르기를, “채색은 몇 사람이 하는가?” 하니, 김취로가 아뢰기를, “용안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요하므로 이치(李璠)를 시켜 채색하고, 다른 곳의 채색은 양희맹(梁希孟), 양기성(梁器成), 장득만(張得萬)을 시켜 합니다. 무늬를 채색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니, 꽃무늬 하나에도 오랜 시간을 들여 채색합니다. 비가 내린 뒤 날씨가 조금 추워져 아교필로 쓰기 어려울 듯하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교를 사용하는가, 녹각교(鹿角膠)를 사용하는가?” 하니, 김취로가 아뢰기를, “면부(面部)는 명교(明膠)를 사용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교는 어느 곳의 아교를 사용하는가?” 하니, 김취로가 아뢰기를, “어용(御容)은 내국의 아교를 사용하고, 그 밖의 채색하는 곳은 도감에서 진배한 아교를 사용합니다.”

10)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7일 신미, “김광욱에게 전교하기를, “중친부, 의빈부, 충훈부, 홍문관에 아교전약(阿膠煎藥) 1盒(合)을, 정원과 예문관에도 아울러 1盒을 사급(賜給)하라.” 하였다(傳于 金光煜 曰, 宗親府·儀賓府·忠勳府·弘文館, 阿膠煎藥 缺一合, 政院·藝文館, 竝一合賜給).”

11) 『승정원일기』 157책(탈초본 8책) 현종 즉위년 8월 24일 임자조, “鄭維岳以爲, 成後龍所言寧肺湯元材, 去阿膠珠·川芎·當歸·熟地黃·五味子等五種”.

12) 김재현, 정종길, 「동의보감 중 아교가 配伍된 처방의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15권 2호, 86쪽.

13) 김재현, 정종길, 위의 논문, 80쪽.

14) 『승정원일기』 157책(탈초본 8책) 현종 즉위년 8월 24일 임자조의 ‘寧肺湯에 약재를 가감하여 3첩을 지어서 들이겠다는 藥房의 계’ 참조.

15) 이소연, 윤덕형 등 외 3인, 「黃連阿膠湯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7권 3호, 590쪽.

16) 『承政院日記』 148책(탈초본 8책), 효종 9년 1월 7일 갑진, “藥房再啓曰, 卽伏承嬪宮乳汁之流出, 比晝頗減之

데 선조 36년(1603) 일본 덕천가강(德川家康)이 조선에 요청한 12종의 약재 목록 가운데 우황(牛黃), 사향(麝香), 진사(辰砂), 옹황(雄黃) 등과 함께 아교를 포함했다.<sup>17)</sup> 약재로 소비된 최상품 아교의 경우 국제 교역품으로서도 충분한 상품 가치가 부여되었던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아교는 왕실 처방약으로서 쓰임을 포함하여 내상 치료제로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여기에 지혈, 보혈의 효능에 기초하여 하혈, 토혈, 혈뇨, 빈혈, 비혈 등의 치료에도 광범위하게 처방되었다. 아울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질, 요통 등의 질병에도 주요 처방약으로 사용되었다.

## 2. 접착제

(활과 기타 병기 제작)

조선시대 각궁의 제작에는 주로 어교를 사용했다. 하지만 세조 이전까지는 각궁이라 할지라도 주로 아교를 사용했다. 아래 내용은 함길도 관찰사 강효문의 事目에 대한 세조의 유시로 그러한 상황을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본국(本國)에서 활[弓]을 만들 때에는 모두 아교(阿膠)를 썼고 본도(本道)에서 화살[箭]에 나무[木]를 쓴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는데, 근래에 어교(魚膠)를 쓰기를 숭상하고 죽전(竹箭)을 좋아하지만...<sup>18)</sup>”

특히 각궁을 제외한 목궁, 죽궁, 철궁 등은 줄곧 아교를 주로 사용했다. 심지어 각궁이라 할지라도 어교 수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혹은 전투와 무관한 연습용 각궁을 제작할 경우에는 아교를 사용했다. 아래 내용은 인조 12년 함경 감사 민성휘가 돌아갈 때 보고한 내용으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변읍(邊邑)에는 어교(魚膠)가 없어 활과 화살을 만드는 데 모두 아교(阿膠)를 쓰고 있으며 전죽(箭竹)도 북쪽 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조가 저축해 둔 어교와 군기시가 소장하고 있는 전죽을 내려 주소서.”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강효문(康孝文)·도절제사(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하기를, “전번에 보낸 부레풀[魚膠]을 칠한 화살[箭竹]은 사후(射侯)

---

教, 不勝喜幸, 卽與趙微奎·梁濟臣·崔栢及諸御醫等商議, 則皆以爲此症, 因氣血俱虛而發, 八物湯元方, 去熟□, 代以乾□, 加條芩一錢, 阿膠珠·天門冬·桑寄生各七分, 多用十餘貼宜當云. 此藥三貼, 爲先劑入, 何如? 答曰, 依啓.” 위 문장가운데 ‘□’ 으로 표시된 곳은 ‘艸+卍’ 로 이루어진 ‘벤질변’ 자에 해당한다. 한글 프로그램의 호환성 불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 로 표시했다.

17) 『선조실록』 163권, 선조 36년 6월 14일 기해, “우황(牛黃) 5냥(兩), 사향(麝香) 1근, 백렴(白藪) 2근, 백랍(白蠟) 1근, 진사(辰砂) 2근, 옹황(雄黃) 1근, 장연동(自然銅) 2근, 아교(阿膠) 2근, 광명주사(光明朱砂) 30근 ... (一, 牛黃五兩, 一, 麝香一斤, 一, 白藪二斤, 一, 白蠟一斤, 一, 辰砂二斤, 一, 雄黃一斤, 一, 自然銅二斤, 一, 阿膠二斤, 一, 光明朱三十斤 ...)”

18)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하는 데 허비하지 말고, 오로지 군기(軍器)에만 사용하라." 하였다.<sup>19)</sup>

활뿐만 아니라 화살을 제작할 때도 역시 아교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외의 각종 병기류를 제작하거나 칠장식 등을 할 때도 주로 아교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경우 각공과 같은 병기 제작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교를 사용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 (부채 제작)

조선시대 대외 사절단과 군신 등에게 선사하기 위해 대량 수요를 촉발했던 부채 역시 대나무, 종이, 칠과 함께 상당량의 아교를 필요로 했다. 1721년 영조 세제 책봉, 1725년 진종 세자 책봉, 1736년 장조 세자 책봉 당시 도감에서 원선장을 만드는데 소요된 교가루(膠末)는 각각 1말에 이를 정도였다.

그런데 부채의 경우 경공장을 통해 중앙에서도 제작했지만 지방 외공장에서 제작하여 중앙으로 보내는 경우도 상당했다. 즉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부채를 진상에 의해 마련했기 때문에 경상도와 전라도 등 대나무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 부채 진상은 지방관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였다. 일례로 정조대에 감영을 통해 매년 중앙에 진상된 부채가 3만 자루에 달했다. 당시 대나무의 과도한 수요로 인해 대밭이 황폐화하자 첩선(貼扇)의 진상을 폐지하거나 부채 크기와 살수를 줄이는 조치까지 취해졌다.<sup>20)</sup> 때문에 각 지방에서 공적으로 소비된 아교의 규모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부채를 사사로이 사유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아교 소비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1706년 금성현령 장완(張椀)은 임부(林溥)의 귀양길에 부채 수백 자루를 선사했다가 탄핵 대상이 된 바 있다.<sup>21)</sup> 진주 병영의 이의풍(李義馮)과 김해 군수 박진신(朴泰新) 역시 각각 7천 자루와 3천 자루의 부채를 사사로이 사유화했다가 정언 허채에 의해 삭직을 요청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sup>22)</sup> 자료의 한계로 민간에서 부채 제작으로 소비된 아교의 규모를 상정하기 어렵지만 역시 적지 않은 양을 소비했을 것이다.

#### (각종 기물의 채색 장식)

왕실의 각종 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의 채색 장식에도 아교가 대량 소비되었다. 일례로 1901년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署理 이용익이 議政府議政 尹容善에게 진연 준비 과정에서 각종 기물의 채색에 필요한 아교를 청구한바 있는데, 수량이 935근에 달했다.<sup>23)</sup> 이들이 모두 채색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함께 청구한

19)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20) 『일성록』, 정조 19년 9월 19일 정묘; 『정조실록』권41, 정조 18년 11월 신해.

21) 『숙종실록』권44, 숙종 32년 8월 경자; 『숙종실록』권44, 숙종 32년 9월 병진.

22) 『영조실록』권47, 영조 14년 6월 갑진, “이의풍(李義豐)은 진주영(晉州營)에 재직 시 부채 7천 자루를 만들고, 박태신(朴泰新)도 김해(金海)에 있었을 때 3천 자루를 만들어 놓았다가 체직되어 올 때에 사사롭게 행장(行裝)속에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마땅히 삭직(削職)하여 탐관(貪官)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李義豐之在晉營, 造扇七千柄, 朴泰新之在金海, 亦造三千柄, 乃其遞來, 反爲私囊之潛貨, 宜削職警貪.)”

23) 『各部請議書存案』 19, “磊碌二百四十六斤 每六錢 一百四十七兩六錢, 丁粉三十斤 每六錢 十八

안료의 양 역시 천여 근에 이르고, 안료와 동일한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량이 채색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02년도 고종의 60세 생일 진연을 위해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金聲根이 議政府參政 金奎弘에게 청구한 아교량 역시 469근에 이르렀으며, 함께 청구한 안료량 역시 수백근에 달했다.<sup>24)</sup> 조선초기 여진족 등과 한참 전쟁이 진행될 때 무기제작을 위해 북방 변경에 보낸 교가 매년 많아야 600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소비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회화의 채색)

조선시대 채색의 주류를 이루는 각종 그림, 즉 일반회화, 어진을 포함한 각종 초상화, 불화, 의궤의 반차도, 벽화, 삽화 등에도 주로 아교가 사용되었다.<sup>25)</sup> 안료의 접착을 위해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비단에 그림을 그릴 경우 채색 이전에 비단 바탕에 더해지는 아교포수 과정에도 아교를 소비했다. 각종 회화에 소비된 안료에 관하여는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적극 수행된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 (금사 제작)

금사는 자수 등 전통 섬유공예 장식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금속 실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편금사와 연금사 형태로 제작, 사용했다. 편금사란 도2와 같이 종이,



도2 편금사의 실레, 중국 청해 두란 출토 龜甲文織金錦帶, 8~9세기(출처, 『紡織品考古新發現』, 101쪽).



도3 연금사의 실레, 경운박물관 소장 雙鶴紋刺繡胸背, 19세기 말(출처, 「직금자수에 사용된 금사의 형태와 특징 비교 고찰」, 84쪽).

가죽 등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얇은 편모양의 금박을 붙여 제작한 경우이고, 연금사란 도3과 같이 가는 섬유질 실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금박을 붙여 제작한 경우이다.<sup>26)</sup> 그런데 이들 금박을 붙이는 접착제로 주로 아교를

兩, 石礪朱六百七十四斤 每六錢 四百四兩四錢, 阿膠九百三十五斤 每五錢 四百六十七兩五錢, 石紫黃六斤 每六兩 三十六兩, 洋礪八十八斤 每四兩 三百五十二兩, 朱紅五十五封 每十兩 五百五十兩”(출전, 『각사등록』 근대편).

24) 『各部請議書存案』 22, “洋礪一百六十封 每封六兩式 九百六十兩, 朱紅六十三封 每封十二兩式 七百五十六兩, 石礪朱一百十七斤 每斤八錢式 九十三兩六錢, 丁粉五十斤 每斤八錢式 四十兩, 磊礪二十八斤 每斤八錢式 二十二兩四錢, 阿膠四百六十九斤 每斤七錢式 三百二十八兩三錢”(출전, 『각사등록』 근대편).

25) 박지선, 「한국 불화의 재료와 제작기법」, 『동악미술사학』 제15호, 동악미술사학회, 2013.

26) 심연옥·이선용, 「직금자수에 사용된 금사의 형태와 특징 비교 고찰」, 『복식』 63(7), 한국복식학회, 2013.

사용했다.<sup>27)</sup>

(비석 글씨 및 비석의 도포)

접착제로서 아교의 쓰임은 다소 생소한 분야에서도 찾아진다.

비석 제작에서의 쓰임은 그러한 실례 가운데 하나이다. 오랜 세월의 풍파로 인해 오늘날 과거 비석에서 아교 흔적을 거의 발견할 수 없지만 의외의 쓰임이 이곳에도 더해졌다. 즉 비석에 하본을 놓고 글자를 새기고 나면 글자 위에 붉은 색 안료인 주사와 아교를 섞어 발랐다. 주로 선명함과 장기 보존 등을 의도한 것이다. <여주신록 사대장각기비(1383)>는 조선 건국 당시의 입비로서 심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글자 위에 채색이 일부 남아 있다.<sup>28)</sup> 상품 아교의 사용을 통해 그와 같은 보존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실례는 신라 비석에서도 발견된다.<sup>29)</sup> 입비 당시 뿐만 아니라 풍우와 햇빛에 의해 결락되거나 탈색되면 아교와 주사를 섞어 다시 칠하여 보수를 진행했다. <정림사지5층석탑미석각자(660)> 상단에는 지금도 이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sup>30)</sup> 아교와 주사를 섞어 바른 후 채색 층이 건조하고 나면 화강암 석회질에 습기 침습을 차단하여 부식을 방지시키기 위해 비면 전체에 아교를 도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작업에는 아교 이외에 송지(송진) 및 밀랍 등도 사용되었는데 아교가 가장 상급의 도포 재료에 해당했다.

(가짜 인삼 제조)

18세기 전반 조선 사회에는 가짜 인삼 제조 사건이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다. 전말은 다음과 같다.

“4월 14일(숙종 37년, 1711)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부제조 유집 일(兪集一)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의약(醫藥)이 전연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비록 의술이 전만 못해서 그렇다고 하겠으나 약재가 정하지 못한 것이 많으니 노상 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을 듯합니다. 약재 중에서는 인삼이 가장 긴중하고 독삼탕(獨蔘湯)에 있어서는 병세의 경중이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게 된 만큼 더욱 심분 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진상으로 바치는 인삼 중에도 역시 아교(阿膠)로 붙인 것이 있으니 어찌 놀라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이는 몸통이 굵은 것을 얻기가 어려운 소치이겠으나 아교로 붙여 크게 하여 속에다 잡것을 넣느니보다는 차라리 몸통은 적어도 독삼(獨蔘)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북의 인삼에 있어서는 삶아서 연하게 하여 도라지에 입히기도 하고 노두(蘆頭)를 조삼(造蔘)에다 붙이기도 하여 이익만 많이 보려고 하여 잘못 먹

27) 김세련, 「조선 중-후기 왕실용 금속제 입사공예품의 제작도구- 의궤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28) 손환일, 앞의 논문, 123-124쪽.

29) 손환일, 앞의 논문, 123-124쪽.

30) 손환일, 앞의 논문, 123-124쪽.

고 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 짓거리가 참으로 극히 놀랍고 통악스럽습니다.....중략”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이 폐단은 말해온 지 이미 오래이나 아직까지 변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북의 인삼에 탄 물질을 섞은 일은 전부터 있어 왔으나 어공(御供)의 소용에게까지 어떻게 그럴기야 하겠습니까? 내의원(內醫院) 의관의 말을 들으니 간혹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빛깔과 볼품을 좋게 하려고 그런 것이겠으나 이 뒤로는 크고 작은 것은 물론하고 반드시 독삼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하는 인삼은 의례히 고을 표시가 있으니 만일 간계를 부렸다가 적발되면 조사해 내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서북 인삼에 간계를 부린 것도 뉘라서 적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논상하면서 고발하라고 하여야만 이 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 집일이 은화를 사주한 율을 쓰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 법률에 속하는 일인 만큼 줄연히 정할 수 없으므로 대신에게 하문하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sup>31)</sup>

“9월 23일(1753) 약방의 입진에 비변사당상·형조판서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도제조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관동(關東)의 공삼(貢蔘)은 보아서 좀 나은 것을 받으므로 번번이 세삼(細蔘)을 아교(阿膠)로 붙여서 상납하니 정결에 흠이 되고 좀에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이 연전에 삼을 붙이지 말고, 세삼이라도 모두 날 뿌리로 올려 보내도록 진달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 후에 삼의 품질이 완연히 좋아져 의관들이 모두 편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지금 들으니 해가 오래되면서 해이해진 탓으로 붙인 삼이 다시 많아졌다 합니다. 지금은 공삼의 상납이 머지않아 변경할 형편이 못되나 명년부터는 붙인 삼을 금하고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날 뿌리로 봉진하라고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32)</sup>

가짜 인삼 만들기에 아교가 사용된 것은 진상에 지친 일반 백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아교가 이미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폭넓게 소비되고 있음을 예상케 한다.

#### IV. 어교의 소비처

##### 1. 약재

어교는 동의보감에 보신익정(補腎益精), 자영근맥(滋榮筋脈), 산어지혈(散瘀止血),

31)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1711) 4월 15일조.

32) 『비변사등록』 126책 영조 29년(1753) 9월 25일(음)조의 ‘都提調 金在魯 등이 입시하여 關東의 貢蔘을 각 덩이 별로 封進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참조.

소종(消腫) 등에 효능을 가진 약재로 언급된다. 실제로 최상품 어교가 구아국으로부터 약재로 수입된 사례가 확인된다.

"7월 29일에 하점(夏店)에 이르러 지휘(指揮) 김성(金聲)을 보았는데, 김성이 말하기를, '내가 내관(內官) 두 사람과 구아국(狗兒國)에 들어가서 해동청(海東靑) 57마리를 잡아서 명어교(明魚膠)·표피(豹皮)·백흑 호피(白黑狐皮)·백서피(白鼠皮)를 무역해 오다가, 해동청은 거의 반이나 길 위에서 죽었으므로 다만 27마리만 바치었다. '고 하며, 명어교(明魚膠) 네 개를 이교(李皎)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이 비록 약소하지만, 원컨대 전하께 바쳐 나의 성의를 표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사은사 이교가 하점의 지휘 김성이 아뢴 글을 전한 것으로 기사에 언급된 명어교는 색이 투명한 최상품 어교를 지시한다. 그리고 어교 4개를 왕에게 봉납하였다는 사실은 약재로서의 쓰임을 구체화해주는 대목이다.

세종 22년에 김종서가 자신의 결백을 상서하는 아래 내용에서도 약재로서의 어교의 소비를 살펴볼 수 있다.

"야인의 여러 종족으로서 조회하는 자는 각진(各鎭)에서 그 이름과 진상 물목(進上物目)을 기록하여 본영(本營)에 보고하면, 수령관(首領官)이 조사해서 예조(禮曹)에 이문(移文)하는데, 신은 다만 그 문서를 결재할 뿐이니, 그 사이에 사의(私意)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홀라온(忽刺溫)·올적합(兀狄哈)이 가끔 어교(魚膠)를 증여하는 자가 있어, 빛이 깨끗한 것은 진상하고 깨끗지 못한 것은 영중 군기(營中軍器)를 수선하도록 예비하는바, 이 물건이 창기(娼妓)에게는 소용 없는 것인데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즉 위 내용에서 언급된 진상품 어교는 약재로 사용될 최상품 어교를 지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약재로서 어교의 구체적 처방 내용을 조선시대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어교가 약재로서 소비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교와 같은 소비 양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 2) 접착제

### (각궁 제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어교는 각궁 제작에서 특화된 접착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내궁방에서 별조궁(각궁)을 제작 할 때도 어교가 전용되었으며<sup>33)</sup>, 함경도 등 변방에서의 각궁 제작 시에도 어교가 전용되었다. 아래 내용은 각궁

33) 장경희, 「조선 후기 내궁방(內弓房) 궁내인(內弓人)의 별조궁(別造弓) 제작실태」, 『東方學』

제조가 집중 전개된 함경도의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아교가 각궁 제작에 특화된 접착제의 하나로 소비되었음을 구체화한다.

“김교에게 이르기를, “네가 진(鎭)으로 가거든 각궁(角弓)을 많이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양정이 아뢰기를, “함길도(咸吉道)에는 어교(魚膠)가 희소(稀少)하여 많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sup>34)</sup>

조선시대에 평안, 함경 2도에 각각 매년 어교 300근씩을 지급했는데 대부분 각궁 제조에 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 황석생(黃石生)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보내는 각궁(角弓) 1백 장(張)과 어교(魚膠) 3백 근(斤)을 수령(受領)하여서 병용(兵用)에 대비하라.’ 하였다.”<sup>35)</sup>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보내는 전죽(箭竹) 3만 개(箇)와 어교(魚膠) 3백 근(斤)을 여러 본영(本營)과 여러 진(鎭)에 나누어 주어서 병용(兵用)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sup>36)</sup>

물론 각궁 이외에 화살의 깃 등 기타 병기의 제작 및 수선에도 어교를 일부 사용했다.

“각색 총통전을 일찍이 나무로 대[幹]를 만들고 가죽으로 깃[翎]을 만들었으나, 나무화살은 만들기가 쉽지 아니하고 가죽도 구하기 어려우므로, 차대전(次大箭)·중전(中箭)·소전(小箭)·차소전(次小箭) 외에, 세장전(細長箭)과 차세장전(次細長箭)은 지금 대나무로 대를 만들고 깃[翎]으로 살깃을 만들어 시험하오니, 화살이 멀리 가고 단단하여 나무화살보다 훨씬 나으니, 노력은 적게 들고 효과는 갑절이나 됩니다. 또 우령(羽翎)은 만들기가 편하고 쉬우니, 이 뒤로는 이 예(例)에 의하여 만들고, 모름지기 어교(魚膠)로 살깃[翎]을 붙일 것입니다.”<sup>37)</sup>

아무튼 매년 일정한 양의 어교를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루어졌다.

4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34)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5)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36)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37) 『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이 경우 대개 중앙 조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는데, 어교가 여진족에게 넘어갈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그만큼 군수물자로서 어교는 중요한 소비재로 취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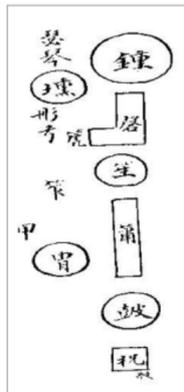
(화약 제조)

조선시대 화약의 원료 가운데 하나인 염초(KNO<sub>3</sub>, 질산칼륨)는 신전자취염소방(화포식)과 신전자초방 등의 제조 방식을 통해 확보했는데, 신전자취염소방 제조 방식의 경우 取土, 和合, 蒸白, 土, 作灰, 交合, 載水, 起火, 初煉, 再煉, 三煉 등의 공정을 거쳤다. 특히 마지막 초련, 재련, 삼련의 공정을 통해 양질의 백색가루인 염초를 산출했다.

이러한 과정에 어교가 사용되었는데 주로 재련 공정에서 사용했다. 즉 초련을 거친 염초를 물을 넣고 다시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백색 가루로 재결정화하는 재련 공정에서 어교를 사용했다.<sup>38)</sup>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염초를 유황, 목탄 등과 섞어 반죽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접착력 제고를 위해 어교를 사용했다.

(명기의 고정)

조선시대 왕의 국장에는 다종의 악기를 명기용으로 제작했다. 즉 정조대 이전에는 아악기와 당악기, 향악기 등 31종을, 이후에는 11종의 아악기를 제작했다. 재료도 변



도4 순조의 국장에 부장한 악기계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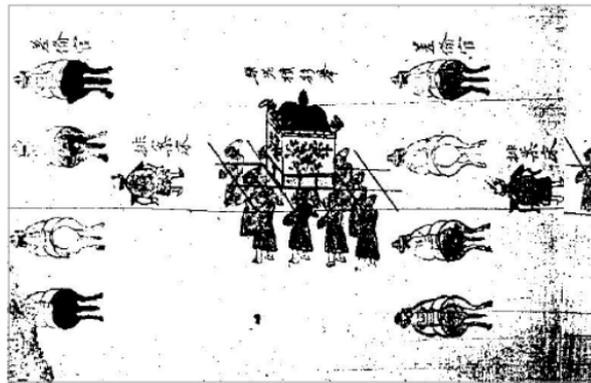


그림 4 영조 국장 발인시 악기궤채여의 이동 모습

화를 수반했다. 예를 들어 종(鐘)의 경우 숙종대까지 진흙으로 구워 만들었으나 정조대에는 구리로 제작했다. 경(磬) 또한 진흙으로 제작하던 것에서 자기(磁器)로 변화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기용 악기는 악기궤채여 바닥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위치시키고 어교로 접착했다(도4). 능으로 이동하는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것이다.<sup>39)</sup> 도 5는 영조 국장 당시 명기용 악기를 실은 악기궤채여의 이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8) 민병만, 『한국의 화약역사』, 아이위크북, 2014, 261쪽.

39) 송지원, 「조선시대 明器樂器의 시대적 변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9집, 한국국악학회, 2006.

## V. 결론

이상 조선시대 산출한 교 가운데 녹각교, 아교, 어교에 한정시켜 소비처의 면면을 개괄적이거나 검토, 제시했다.

검토 결과, 녹각교는 주로 약재로 소비된 양상을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왕실 사례 등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명정, 재궁, 관 등의 금분이나 분채 장식에서 내의원에 소장한 최상품의 약재인 녹각교를 선택, 사용함으로써 접착제로서 특이한 소비 특징도 살피게 했다.

아교 역시 약재로서 광범위한 소비를 드러냈으며 녹각교와 마찬가지로 최상품 약재로서의 소비도 살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접착제로서의 소비 역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전개했다. 특히 일반 회화는 물론이고 왕실 행사에서 사용된 각종 기물의 채색에 대량의 아교가 소비되었다. 아울러 비석의 글자 및 표면 도포, 가까 인삼 제조와 같은 특이한 소비도 살필 수 있게 했다.

어교는 약재로서의 소비는 그다지 적극적 면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주로 접착제로 소비되었으며 각궁 등의 제작에 특화된 소비를 내보였다. 아울러 화약의 제조, 약기궤 바닥에 약기용 명기 고정 등 특이한 소비처도 살피게 했다.

조선시대에 교의 생산 기반 파악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의 하나인 생산지에 관해 기존 연구는 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초했다. 특히 어교와 녹각교의 경우 군현 단위 토공 항목에 어교와 녹각교가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지로 상정했다.<sup>40)</sup>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토공 항목은 어교와 녹각교의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군현을 한정, 기록한 것이며, 실제 생산지를 모두 포괄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어교 생산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언급된 어교 분정 군현에 한정되지 않았다. 일례로 경상도 경주부 관할 군현의 경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분정 대상으로 언급된 동래현 이외에 경주부, 울산군, 기장현 등이 새로운 생산지로 파악되었다.<sup>41)</sup> 충청도 역시 유일하게 어교 분정 대상에 해당했던 홍주목 관할의 6개 군현 이외에 서산군과 면천군이 새로운 산출지로 파악되었다. 분정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주목 관할 군현에서도 서천군, 남포현, 임천군 등이 새로운 산출지로 파악되었으며, 비인현, 한산군, 석성현 등의 경우 어교 생산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상정되었다.<sup>42)</sup> 이러한 양상은 전라, 평안, 함경, 경기 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43)</sup>

40) 신학, 「동양회화에서의 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1) 김병모, 「조선시대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방학』 4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2.

42) 김병모, 「조선시대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8, 동아시아고대학회, 2022.

43) 김병모, 「조선시대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24, 동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선시대 교의 생산 및 수급 기반이 그다지 열악하지 않았음을 가늠케 한다. 아울러 소비 역시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전개될 수 있는 토대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었음을 살피게 한다.

---

서미술문화학회, 2022; 김병모, 「조선시대 평안도 지역의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 『미술문화 연구』 26, 동서미술문화학회, 2023; 김병모, 「조선시대 황해도 지역의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 『동방학』 4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3.

## 참고문헌

- 김미라, 「조선왕실 제작 玉冊 內函의 편년과 활용」, 『東洋美術史學』 7.
- 김병모, 「조선시대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 -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방학』 4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2.
- 김병모, 「조선시대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8, 동아시아고대학회, 2022.
- 김병모, 「조선시대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24, 동서미술문화학회, 2022.
- 김병모, 「조선시대 평안도 지역의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 『미술문화연구』 26, 동서미술문화학회, 2023.
- 김병모, 「조선시대 황해도 지역의 어교(魚膠) 생산지와 산출 어교」, 『동방학』 4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3.
- 김세린, 「조선 중-후기 왕실용 금속제 입사공예품의 제작도구- 의궤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 김재현, 정종길, 「동의보감 중 아교가 配伍된 처방의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15권 2호.
- 민병만, 『한국의 화약역사』, 아이워크북, 2014, 『음악연구』 제39집, 한국국악학회, 2006.
- 박지선, 「한국 불화의 재료와 제작기법」, 『동악미술사학』 제15호, 동악미술사학회, 2013.
- 송지원, 「조선시대 明器樂器의 시대적 변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9집, 한국국악학회, 2006.
- 신학, 「동양회화에서의 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심연옥·이선용, 「직금자수에 사용된 금사의 형태와 특징 비교 고찰」, 『복식』 63(7), 한국복식학회, 2013.
- 이소연, 윤덕형 등 외 3인, 「黃連阿膠湯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7권 3호.
- 장경희, 「조선후기 정종 후릉(厚陵)의 수개와 그 영향」, 『東方學』 38,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8.
- 장경희, 「조선 후기 내궁방(內弓房) 궁내인(內弓人)의 별조궁(別造弓) 제작실태」, 『東方學』 4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차 연구토론회  
『동유라시아의 향신료와 약재』

◎ 일시: 2023년 9월 23일(토) 13: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201호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  
됨(NRF-2020S1A6A3A01054082)



